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법
- 정치자금법 정금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정금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규칙 별지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 정금규칙 별지서식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인터넷규칙 별지서식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토론규칙 별지서식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여심규칙 별지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위원회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구위원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 구·시·군위원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위원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법 및 규칙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 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신고·제출·보고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정당 ·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제 1 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 · 신청

I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 5

1. 선거일 및 임기	6
2. 선거권자	6
3. 후보자등록	7
4. 선거운동	8
5. 선거비용	10
6. 투표 및 개표	10
7.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의석배분	13

II 후보자등록 신청 / 17

1. 후보자등록 요건	17
2. 후보자등록 신청	18
3.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 : 후보자추천	21
4.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 : 첨부서류	22
5. 후보자사퇴 신고	34
6. 정당의 기호 결정	35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 39

1.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39
2.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41

제 2 편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I 선거운동 / 49

제 1 절 |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정의 49
2. 선거운동기간 50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51
4. 선거운동기구 52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54
6.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등 58

제 2 절 | 선거운동 방법

1.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등 62
2.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68
3.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74
4. 그 밖의 선거운동 79

II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 8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89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90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92
4. 정책공약집 배부 92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94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95
7. 당원집회 개최 96
8. 당원모집 금지 97
9. 당사게시 선전물 98

제 3 편 재외선거

I 재외선거제도 일반 / 103

- 1. 재외선거 개요 103
- 2. 재외선거 절차 103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신고 / 109

- 1. 재외투표참관인 신고 109
- 2. 회송참관인 신고 110

III 국외선거운동 / 115

제 1 절 | 국외선거운동 일반

-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115
-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16

제 2 절 | 국외선거운동 방법

- 1. 언론매체 이용 국외선거운동 117
- 2.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120
- 3. 기타사항 121

제 4 편 정치자금

I 정치자금 일반 / 127

1. 정치자금의 의의 127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29
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 132
4.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132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 135

1. 선거비용의 보전 135

제 5 편 선거여론조사 안내

• • 선거여론조사 • •

1. 선거여론조사 개념 141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41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146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49
5.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작성예시 150

제 6 편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안내

•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 •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153
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153

▶ 부 록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 제출사항 목록 157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58
3. 각종 신청·신고 제출 서식 목록 190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58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60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262
7.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관련 점자출판시설 현황 264
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266
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표 267

제1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 I.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 II. 후보자등록 신청
-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I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관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구 분

주 요 일 정

2023년 12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2. 1. 기 공고)

2024년 1월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직(1. 11.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1. 11.부터 선거일까지)

2024년 3월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3. 11.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3. 21.~3. 22.)
 » 선거기간개시일(3. 28.)
 » 선거운동기간(3. 28.~4. 9.)
 » 재외투표(3. 27.~4. 1.)
 » 선거공보 제출(3. 29.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3. 29.)

2024년 4월

» 선상투표(4. 2.~4. 5.)
 » 사전투표(4. 5.~4. 6.)
 » 투표 및 개표(4. 10.)
 » 선거비용 보전청구(4. 22.까지)

2024년 5월

» 기탁금 반환(5. 10.까지)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5. 20.까지)

2024년 6월

» 선거비용 보전(6. 9.이내)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거일 : 2024. 4. 10.(수)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4. 3. 28.(목) ~ 4. 10.(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2024. 5. 30. ~ 2028. 5. 29.)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이 경우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

나. 연령산정기준일 : 선거일 현재(2006. 4. 1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3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2024. 3. 21.(목) ~ 3. 22.(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 500만원(한 후보자당)

[감액 규정에 따른 대상별 기탁금 납부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일반후보자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
500만원	250만원	350만원

- ☑ 기탁금 감액 대상 후보자의 출생 기준일(선거일 : '24. 4. 10.)
 - 50% 감액 대상(29세 이하) : '94. 4. 12. 이후 '06. 4. 11. 이전 출생자
 - 30% 감액 대상(30세 이상 39세 이하) : '84. 4. 12. 이후 '94. 4. 11. 이전 출생자

📖 기탁금 감액에 관한 규정(법 제56조)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기호결정

-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표시함.
- 2)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함.

3)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함.

※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추첨하여 결정함.

4)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4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4. 3. 28.(목) ~ 4. 9.(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의 정의

1)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마)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음.

-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함.

-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 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2023. 10. 13.)부터 법 제6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5 선거비용

가. 선거비용제한액 : 금5,280,381,600원(2023. 12. 1. 기 공고)

나. 선거비용의 정의

- 1)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 2)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

다. 선거비용 보전

- 1)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4. 4. 22.(월)까지 선거일 후 10일까지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2) 선거비용 보전 : 2024. 6. 9.(일)이내 선거일 후 60일 이내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 1) 투표기간 : 2024. 4. 5.(금) ~ 4. 6.(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2) 투표대상 : 거소선상투표 및 재외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 3)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
※ 군부대 밀집지역 등의 경우 추가 설치·운영 가능

4) 투표절차

①투표소 입소 → ②관내·관외선거인 구분 → ③본인여부 확인(전자적 방식 서명·손도장) → ④투표용지 수령(관외선거인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함께 수령) → ⑤기표소에서 기표(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 → ⑥투표함 투입 → ⑦퇴소

- ☑ 관내·관외선거인은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함.
- ☑ 다만,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함.

나. 선거일 투표

1) 투표시간 : 2024. 4. 10.(수) 오전 6시 ~ 오후 6시

2) 투표대상

- 가) 거소·선상·사전 및 재외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나)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24. 4. 2.)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로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사람
 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인으로서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일전 8일(2024. 4. 2.) 부터 선거일까지 신고한 사람

3) 투표절차

①투표소 입소 → ②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날인·손도장) → ③투표용지 수령 → ④기표소에서 기표 → ⑤투표함 투입 → ⑥퇴소

다. 개 표

- 1)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 2)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 3) 개표절차
 - ①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②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 운영부) → ③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④개표상황표 확인 → ⑤후보자(정당)별 득표수 검열 → ⑥위원장 공표



재외·거소·선상투표 방법

○ 재외투표

1. 투표기간 : 2024. 3. 27.(수) ~ 4. 1.(월) 기간 중 재외위원회별로 정하는 6일 이내의 기간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2. 투표장소 : 재외위원회에서 설치한 재외투표소(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
3. 투표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한 사람
4. 투표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국내회송(외교행낭)
 -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 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재외위원회가 개표함.

○ 거소·선상투표

1. 투표기간 및 방법
 - 가. 거소투표 : 거소투표신고인은 거소지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 나. 선상투표 : 선상투표신고인은 2024. 4. 2.(화) ~ 4. 5.(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해당 선상투표소에서 투표 후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로 직접 해당 시·도위원회에 송부
2.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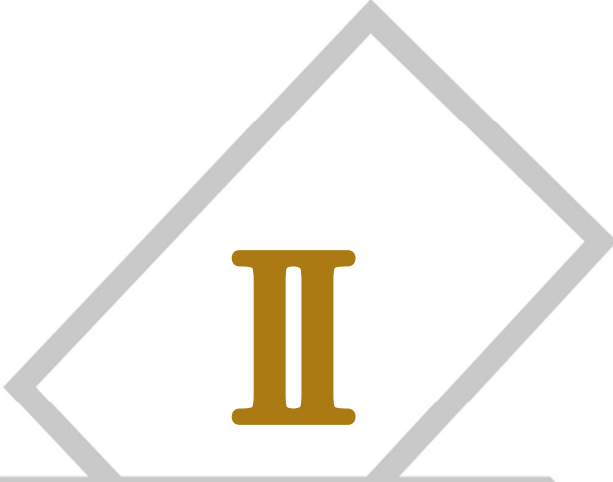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 제외)

 - 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규칙 별표1)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마.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3.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
 - 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②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③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7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의석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법 제18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II

후보자등록 신청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 안내 ◆

-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기 간 : 후보자 등록신청 전
 - ▶ 장 소 : 중앙위원회
 - ▶ 대 상 : 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후보자 등록 등 각종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요건

- ▶ 선거일 현재 18세(2006. 4. 11.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
-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24. 3. 11.(월)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입후보 가능
-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 후보자등록

- ▶ 등록서류 사전 검토
 - 기 간 : 2024. 3. 20.(수)까지
 - 장 소 : 중앙위원회
 - 대 상 : 등록신청서류, 선거공보 등의 원고 및 기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 ▶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24. 3. 21.(목) ~ 3. 22.(금) **매일 09:00 ~ 18:00**
 - 접 수 처 : 중앙위원회

○ 기탁금 납부

- ▶ 기탁금액 : 500만원(한 후보자당)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250만원(50%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350만원(30%감액) 납부
- ▶ 납부방법 : 후보자등록 신청 시 중앙위원회가 개설한 기탁금계좌에 정당 명의로
무통장입금 후 입금표 제출

II. 후보자등록 신청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법 제16조)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6. 4. 11.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30일[2024. 3. 11.(월)]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법 제53조제2항).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1) 선거법,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2004. 3. 12., 정금법 제49조는 2005. 8. 4.)전에 상기 밀출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 3. 12.) 제6조, 부칙(2005. 8. 4.)제5조].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아래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 ※ 다만, 2014. 2. 13. 전에 "5"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14. 2. 13.)제8조].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자격 : 2024. 3. 21.(목) ~ 3. 22.(금)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신청권자 : 소속 정당

라. 등록처 : 중앙위원회

마. 신청서식 : 붙임 0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라)]

바.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류명	수량 (부, 통)	비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라)
2. 첨부서류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마)
○ 후보자 본인 승낙서	각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직계비속(18세 이상 외손자 포함) 중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직계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각 1	구·시·읍·면·동 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각 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나)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채납증명 관한 신고서	각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차) ☞ 신고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에 의해 작성
○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 ☞ 회보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발행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각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파)
○ 기탁금 입금표	1	기탁금 납입 증빙서류(무통장 입금표 등)
○ 장애인증명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3. 관리상 필요서류		
○ 정당의 당인, 대표자 인장 및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서	각 1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사 진 ※ 5×7cm의 천연색으로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전자과일 동시 제출)	각 2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 사진규격 등: 붙임 30 <별지> 참조
4. 경력방송원고제출서(TV, 라디오)	각 2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나)

등록무효사유(법 제52조)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서식 : **붙임 02**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 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함.
- 사립학교의 교원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는 당원이 될 수 있음.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등록무효사유(법 제52조)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때

▣ 법 제57조의2②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이 경우 모두 무효로 됨)

3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후보자추천)

가. 추천인원 :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석)이내

나. 추천방법(법 제47조, 정당법 제36조의2)

- 1)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함.
- 2)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법 제50조)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

-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사람의 다음으로 해야 함.

4 후보자등록 신청의 준비(첨부서류)

가.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2호)

- 1) 신고(산정)기준일 : 2023. 12. 31.(일)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 2) 신고범위
 - 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나)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 및 사실상 타인 소유라도 등록 대상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누락주의).
 - 다)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 항목으로 신고하며, 가상자산 예치금은 예금 항목으로 신고함(신설항목으로 누락주의).

3)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재산을 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참고사항

-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대상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
- 세금납부·체납사항의 신고거부 대상 : 후보자의 직계존속
- ※ 직계비속은 세금납부·체납사항의 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4) 신고서식 : **붙임 03**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내)]

5)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참조

등록대상재산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 이전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일 후에 사망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오빠와 주거(세대)를 같이 하는 미혼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오빠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며느리와 계부·계모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지거부 가능함.
-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재산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다만, 수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경우와 명인방법에 따라 소유권이 보존된 수목의 집단일 경우 신고대상임.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으나, 계약서 기재여부, 채권채무의 발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추후 돌려주고 받는 금액이라면 임대인에게는 "채무", 임차인에게는 "채권"으로 신고함.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는 최근 공개내역을 확인하여 재산 종류 및 신고액이 누락 신고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작성함.

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3호)

1) 신고기준일 : 2024. 2. 21.(수) 후보자등록일 전 1개월 현재

- ☑ 다만, 미필자(병역준비역, 징·소집대상, 복무중인자)는 신고기준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를, 병역사항의 변동이 없는 군필자·면제자는 신고기준일 전 또는 이후 발행한 병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신고대상자

가)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나) 후보자의 배우자로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후보자의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 ☑ 신고기준일에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전에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이 사망한 경우 병역 사항 신고대상이 아님.
- ☑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후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전환복무 포함. 이하 같음),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된 사람
-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 후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3) 신고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복무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 입영연월일 -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 전역·소집해제 사유
○ 현역·보충역·대체역·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사람	- 복무분야 -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계급 -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중시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 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 (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

4) 신고서식 등

가) 신고서식 : **붙임 04**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첨부서류 :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 ☑️ 복무 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복무 중인 군인이 발급받는 복무확인서에는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
-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 시 [공직자(등) 신고용] 용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병적증명서에는 복무부대(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기재되어야 함.
- ☑️ (외)손자 중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함.

다) 신고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참조

5) 질병명 등 비공개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혼인 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함.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

- 신청권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 처리절차
 - ▶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하거나 해당 후보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함.
 - ▶ 확인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함.

다.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4호)

- 1)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2) 신고대상범위
 - 가)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나) 혼인한 딸과 외(증)조부모 및 외(증)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당 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됨.
- 3) 신고서식 : **붙임 05**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재)]
- 4) 신고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참조

세무서 및 구·시·군청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되, 해당 증명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5) 신고거부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함.

6)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가) 시 기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월(2024. 2. 21.) 이후

나) 신청서식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붙임 5-1**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붙임 5-2**

다) 세금별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

구 분	발급대상기간	발급증명서명	발급기관
소득세	2018년~2022년도 발생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전국 세무서
종합 부동산세	2019년~2023년도 발생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2019년~2023년도 부과분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전국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 서식에 따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함.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득세 등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라.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법 제49조제4항제5호)

- 1) 신청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 2) 신청시기 : 2023. 10. 30.(월)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 3) 신청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 4) 발급신청·조회대상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정당이 본인 또는 소속 당원대상 조회
- 5)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 선고유예와 몰수·추징 등 부가형, 재판 중인 범죄에 관한 사항은 제출대상 아님.
- 6) 신청서식 : **붙임 06**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사)]
- 7) 유의사항
 - 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나) 범죄경력 조회신청 시 해당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열람 가능
 - 다)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작성
 -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조회
- 8)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가) 제출서식 : **붙임 07**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케)]
 - 나) 첨부서류 :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다) 유의사항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

마.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학력증명서의 발급

(법 제49조제4항제6호)

1)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가) 제출서식 : **붙임 08**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태)

나) 첨부서류 : 학력 증명서류

※ 제출서 작성 시 학력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학력 증명서류의 발급

가) 제출대상 학력증명서

-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외국어 번역사 자격증이 있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개인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번역사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한글번역문도 가능하며, 이 경우 경력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정규학력증명 관련 유의사항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선거공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의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학 학사”, “○○대학교 ◇◇학사(◇◇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대학교 ◇◇대학 ◇◇학과 졸업”, “○○대학교 ◇◇학과 졸업”, “○○대학교 졸업” 등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 기 발급된 대학의 장 명의의 졸업증명서가 있더라도, 그 학습과정이 정규학부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졸업”이라고 게재할 수 없음.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학사학위 취득예정”으로 게재할 수 있음.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또는 교육부장관 등이 학위를 수여한 경우 “◇◇학사(◇◇전공)” 등으로 기재 가능함.
- 정규학력이 있는 사람은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음. 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을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바.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작성(법 제49조제4항제7호)

1) 신고대상 경력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재·보궐선거 포함)

☑️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1991. 6. 20.)(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육감선거부터

☑️ 교육의원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06. 12. 20.)(법률제8069호, 2006. 12. 20. 전부 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한 교육의원선거부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회 지방선거부터이며, 교육위원선거 입후보 경력은 제출대상 아님

2) 신고내용

- 가) 선거 실시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여부
- 나)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기재
- 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 작성·제출

3) 제출서식 : **붙임 09**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따]

4)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참조

사.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발급(법 제49조제4항제1호)

- 1) 발급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2) 발급기관 : 구·시·읍·면·동 장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18세 이상)가 있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53조제1항·제2항)

- 1)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 2) 발급신청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3)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

1. 입후보 제한 대상 공무원(법 제53조제1항)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예시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역사, 국제협력역사 등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접속 ⇨ 통합검색창에서 기관명 검색
 ⇨ '정기공시'클릭 ⇨ '자본금 및 주주현황'클릭 ⇨ 정부지분 확인

-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2. 사직시기 : 선거일 전 30일(2024. 3. 11.)까지
- ▶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

자.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 1) 신고대상 : 정당의 당인, 대표자 인장 및 후보자의 인장
- 2) 신고시기 : 후보자 등록신청 시
※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인장은 중앙위원회에 기 등록된 인영으로 같음 가능
- 3) 신고처 : 중앙위원회
- 4) 수 량 : 각 1매
- 5) 제출서식
가)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인장 : **붙임 2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나) 후보자의 인장 : **붙임 1-3**

차. 기탁금의 납부(법 제56조, 규칙 제24조)

- 1) 기탁금액 : 500만원(한 후보자당)

[감액 규정에 따른 대상별 기탁금 납부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일반후보자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
500만원	250만원	350만원

- 기탁금 감액 대상 후보자의 출생 기준일(선거일 : '24. 4. 10.)
- 50% 감액 대상(29세 이하) : '94. 4. 12. 이후 '06. 4. 11. 이전 출생자
 - 30% 감액 대상(30세 이상 39세 이하) : '84. 4. 12. 이후 '94. 4. 11. 이전 출생자

- 2)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시
- 3) 납부방법
중앙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예금계좌에 정당의 명의로 무통장(이체) 입금한 후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 기탁금 납부 계좌번호 : 농협 301-0343-6260-21 (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 가능

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요건 등

1. 기탁금 반환요건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다만,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2. 반환기한 : 2024. 5. 10.(금) 이내 (선거일 후 30일 이내)

3. 반환방법 : 정당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 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되,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중앙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탁금의 국가 귀속

1. 귀속사유 : 법 제57조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 기탁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사람은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중앙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5 후보자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고처 : 중앙위원회

다. 신고방법

- 1) 후보자 자신이 직접 중앙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 2)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신고서식 : **붙임 10**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6 정당의 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4. 3. 22.(금)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후

나. 결정기관 : 중앙위원회

다. 결정방법

1) 2024. 3. 22.(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함.

가)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 다수 의석순

※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2 이상의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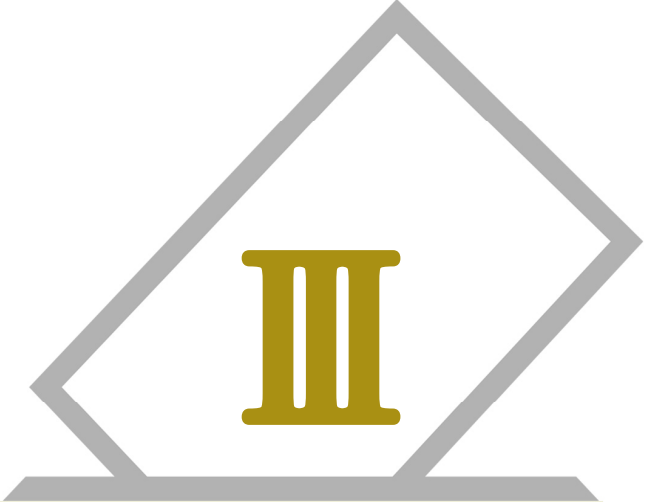
나)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 ⇨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2)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계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함.

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보다 상세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 방법은 본 선거사무안내 책자의 [부록] -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 투·개표참관인 신고

- ▶ 정당(후보자)별 참관인 신고인원

투표 참관인	선거일투표소	정당(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명
	사전투표소	정당(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 2명
개표참관인		구·시·군마다 후보자추천정당 6명, 무소속후보자 3명

- ▶ 신고기한 및 신고처

구 분		신고기한	신 고 처
투표 참관인	선거일투표소	2024. 4. 8.(월)까지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소	2024. 4. 3.(수)까지	읍·면·동위원회
개표참관인		2024. 4. 8.(월)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 ▶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제1항)
-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음.
 -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으나, 투표참관인은 될 수 없음.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4. 1. 11.(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개표참관인은 제외).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공통사항

1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61조·제162조, 규칙 제88조)

가. 신고권자 : 해당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포함)를 추천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 1) 투표참관인 : 2024. 4. 8.(월)까지 선거일전 2일까지
- 2) 사전투표참관인 : 2024. 4. 3.(수)까지 선거일전 7일까지

다. 신고처 : 읍·면·동위원회

라. 신고인원 : 정당(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

마.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2)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제1항)
- 3)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4)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4. 1. 11.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법 제60조제2항).

바. 투표참관인 지정

1) 정 수 : 투표소마다 8명

2) 지정방법

가) 신고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우선 1명씩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선정인원은 8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

나) 신고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

- 읍·면·동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사. 사전투표참관인 지정

1) 정 수 : 없음

2) 지정방법

선정·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후보자)이 선정한 사람 밖에 없는 때

- 읍·면·동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

아.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

※ 선거일(사전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사전투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자.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차. 교대참관

- 1) (사전)투표관리관이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대참관이 가능함.
- 2) 교대 참관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하여야 함.

카. 참관요령

- 1) (사전)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2)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타. 금지행위 : 투표에 간섭 또는 권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개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

가. 신고권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무소속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 2024. 4. 8.(월)까지 선거일전 2일까지

다. 신고처 : 해당 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인원 : 구·시·군마다 후보자추천정당은 6명, 무소속후보자는 3명

-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명을 선정·신고할 수 있음.
- ☑ 개표소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신고함.

마. 개표참관인 선정

- 1)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만 선정한 경우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하며,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2)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위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2) 선거권이 없는 사람(법 제18조제1항)
- 3)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가)]

자. 교대참관

- 1) 구·시·군위원회가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대참관이 가능함.
- 2) 교대참관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하여야 함.

차. 참관요령

- 1)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시·군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3)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통보할 수 있음.

제2편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I. 선거운동

II.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선 거 운 동

- ◆ 선거운동기간(13일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임.
 - 2024. 3. 28.(목) ~ 2024. 4. 9.(화)
- ◆ 선거기간(14일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임.
 - 2024. 3. 28.(목) ~ 2024. 4. 10.(수)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I. 선거운동

제 1 절 | 선거운동 일반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제1항)

가.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조제1항)

-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2)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법 제58조제1항 단서)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2 선거운동기간(법 제59조)

가. 선거운동기간 : 2024. 3. 28.(목) ~ 4. 9.(화) 13일간

나.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가)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음.
- ☑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에)]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함.

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

-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2023. 10. 13.)부터 법 제6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2)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5) 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 법 제5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다만, 제6호 중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위헌 결정[2021헌가14, 2024.1.25.]
-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4. 1. 11.(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제218조의14)

- ※ 후보자의 배우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위 (4)부터 (7)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8)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9)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10) 법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선거운동기구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 1) 설치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2) 설 치 수 : 1개소(선거연락소는 설치할 수 없음)
- 3)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

-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안에는 설치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는 중앙당 당사에 둘 수 있음.

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법 제63조제1항, 규칙 제28조제1항)

- 1) 신고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2)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 3)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4) 신고서식 : **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가)]

다. 선거대책기구 설치(법 제61조)

- 1) 설치권자 : 정당
- 2) 설치장소 :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각 1개(설치신고 불요)

라.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제6항, 규칙 제27조제3항·제4항)

- 1)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 2)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 3) 게재사항 :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 4)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마. 선거공보 등 첨부(법 제61조제6항, 규칙 제27조제5항·제6항)

- 1) 종 류 :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 2) 첨부수량

구 분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선거사무소	50부 이내	후보자마다 각 10매 이내
선거대책기구	제한없음	

- 3) 첨부장소 : 선거사무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 1)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추천할 수 있음.
-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함.

나. 사무소의 설치

- 1)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 2) 설치기간 : 2023. 12. 12.(선거일 전 120일)부터 2024. 5. 10.(선거일 후 30일)까지
※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 3) 설 치 수 : 구·시·군마다 1개소
※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 안에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음.

4)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안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 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1)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2) 신고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3) 신고사항

가) 설치연월일

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다)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라)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4) 신고서식

가)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 1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나) 인영신고서 : **붙임 1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라. 사무소의 간판 등

1)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2)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3)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4)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항 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마. 소장 등의 선임

1) 선임인원

- 가)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나)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2)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같음함.

※ 교체 시에는 그 때마다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바. 회계책임자 선임 등

(정금법 제34조 내지 제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1) 회계책임자 선임

- 가) 인 원 수 : 1명
- 나)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가)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나)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시
- 다)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라) 신고서식 및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 16**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7** [별지]
- 예금계좌 신고서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예금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예금계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수입·지출 겸용사용 가능)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가)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나) 신고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다) 신고서식 및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16**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7** [별지]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4) 회계보고

- 가)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나) 보고기한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정당이 등록 취소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등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8조·제27조의3)

1) 신고권자 및 신고처

신 고 대 상		신 고 권 자	신 고 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정당	중앙위원회
	선거사무원	정당 또는 선거사무장	

- 2)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3)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 4) 신고서식 : **붙임 2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나)]
- 5) 선임인원

가) 선거사무장 : 1인

나) 선거사무원 : 34명 이내(시·도 수의 2배수 이내)

☑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 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선거사무장은 교체선임횟수에 제한 없음).

6)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임

가)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다) 장애인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장애인
 -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정당추천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정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실비(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일비, 식비)외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음.

나.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 1) 제출시기 : 선임 또는 교체신고 시
- 2) 제출처 : 중앙위원회에 1매
- 3) 신고서식 : **붙임 2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등

(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제34조)

- 1) 회계책임자 선임 : 중앙당 회계책임자가 겸함
- 2)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 가) 신고자 : 중앙당의 대표자
 - 나)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다) 신고처 : 중앙위원회

라) 신고서식 및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 16**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7** [별지]
- 예금계좌 신고서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예금계좌 신고는 회계책임자 신고 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하여야 함.
-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수입·지출 겸용사용 가능)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나) 신고서식 및 붙임서류

-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16**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7** [별지]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라. 표지 (재)교부 신청(규칙 제28조제3항·제6항)

1) 교부신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임신고로 갈음

2)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가) 신청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나) 신청처 : 중앙위원회

다)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표지를 패용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제 2 절 | 선거운동 방법

1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등(법 제65조, 규칙 제30조)

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 1) 작성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2) 작성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2024. 3. 18.(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공보 작성·제출 수량 공고
- 3) 작성방법
 - 가)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지질 및 중량은 제한없음.
 - 나) 면 수 : 12면 이내
- 4) 게재사항
 - 가) 앞면 게재사항 :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명
 -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
 - 다)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선거공보 작성 시 발달장애인, 다문화유권자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을 참고할 수 있음
※ 가이드 및 용어집 파일은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다운로드



- ☑ 책자형 선거공보 PDF 파일도 함께 제작하여 선거공보 제출 시 제출
※ 제작방법 등은 같은 절 ‘다. 정책·공약마당사이트를 통한 선거공보 공개 등’ 내용 참조

- 5) 참고사항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 게재 불가

- 나)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책자형 선거공보 우측 상단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 가능

선거공보 학력 기재 시 유의사항

-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기재할 수 없음.
 - ▶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기재하여야 함.
 - ▶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 ▶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선거공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은 본문 “제1편 - II - 4 - 마.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학력증명서의 발급”의 예에 의함.

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 및 발송

- 1) 제출기한 : 2024. 3. 29.(금)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2) 제출장소 :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3) 제출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4) 제출서식 : 붙임 24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나]
 -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할 책자형 선거공보 파일(20MB 이내) 함께 제출

5) 선거공보의 발송

가) 발 송 자 : 구·시·군위원회

나) 발송시기 : 2024. 3. 31.(일)까지

6) 유의사항

가)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한 정당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음.

나) 선거공보 제출 시에는 수량 확인 및 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다) 선거공보의 인쇄업자는 중앙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라) 일부지역에 선거공보(전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을 투표구 단위로 지정하여 선거공보의 제출 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하지 않을 지역을 해당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구단위로 지정함.

 선거공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법 제65조제13항)

- 원 칙 :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 정정·삭제 신청

- ▶ 사 유

-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별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 ※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 기 한 : 2024. 3. 29.(금)까지 **선거공보 제출마감일까지**

- ▶ 방 법 : 정당이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

- ▶ 서 식 : **붙임 25**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라)]

다. 정책·공약마당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한 선거공보 공개 등

- 1) 제출대상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2) 제출처 : 중앙위원회
- 3) 제출시기 : 선거공보 제출시
- 4) 제출방법 :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공보 PDF 파일(용량 : 20MB 이내)
- 5) 유의사항
 - 가) 시각장애인의 공약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이미지가 아닌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PDF 파일 제작(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의 PDF 파일 제작 · 확인 방법

☞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 :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인식 가능한 형태

- ▶ 원본을 ① 한글 파일(hwp)로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저장(한글프로그램 PDF 인쇄 기능 이용)한 파일이나, ② 문자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치된 PDF 파일이 이에 해당함.
- ▶ PDF 파일에서 검색(Ctrl+F)을 통하여 문자인식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 제출
- ▶ 선거공보 등 제작업체에 요청하여 파일 제작

- 나) 인쇄물과 내용·게재순서가 동일해야 하며, 한 화면에 인쇄물 한 면씩만 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두 쪽 보기 허용
- 다) 선거공보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책·공약마당에 미게시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선택사항)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법 제65조제4항)

1. 작성·제출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2. 수 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3. 제출기한 : 2024. 3. 29.(금)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4. 제출장소 :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한글이 병기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한글원고 1부를 중앙위원회에 함께 제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선택사항)

5. 작성규격 및 방법

- 가)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나) 면 수 :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24면) 이내
- 다) 작성방법 : 인식이 용이한 '천공방식'으로 작성 권고
- ※ 점자형 선거공보를 터블로이드방식(일명 물방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음.
 - ※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점자를 해독한 내용을 그대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도표·도형 등을 포함한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풀어서 작성해야 함.
 - ※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자출판시설을 통해 인쇄하는 것을 권장함(점자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어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읽을 수 없는 사례 발생).

6. 게재사항

- 가) 앞면 게재사항(한글과 점자 병기) : 선거명 및 정당명
- 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활용(법 제65조제4항)

1. 제작방법 : 제작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VOICEYE(중앙선관위 제공)' 활용
2. 게시위치 :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자료공간-선거/법규/정당-자료공간)
 - ※ 후보자 부담비용 없음, 인쇄소 활용 가능
3. 작성방법*

▶ 모 양 : 정사각형

▶ 크 기 : 가로 18mm, 세로 18mm 이내 ※ 권장 크기 15mm×15mm

▶ 위 치 : 책자형 선거공보 우측 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32mm 크기의 정사각형 내 위치
※ 매 흡수면 우측상단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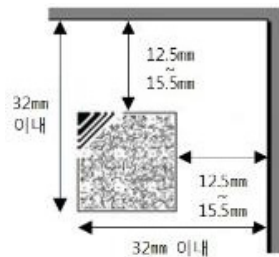
▶ 예 시 : 오른쪽 그림 참조

▶ 해상도 : 최소해상도 300DPI [권장 해상도 600DPI]

▶ 색 상 : 바코드 색상 및 바탕색 구분을 위해 바코드 외곽 테두리 1mm 이상을 흰색으로 적용

▶ 코드 저장 데이터 :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되므로 반드시 문자와 숫자가 포함된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방동위 국립전파연구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등(선택사항)

○ 책자형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법 제65조제11항)

1. 제출기한 : 2024. 3. 29.(금)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2. 제출장소 : 중앙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3. 제출수량 :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과 동일
4. 유의사항

가)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그림 형식의 파일확장자 및 선거공보의 사진·그림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지 않는 점에 유의

※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 **[붙임 26]**

[파일 확장자별 음성·점자 등 출력 여부]

가 능	불 가능
- (음성) MP3, WMA 등 - (음성·점자) DAISY, HWP, DOC, TXT 등*	- 읽기 전용 - JPG, JPEG, PNG, TIFF, PDF 등 그림파일

* 내레이터 기능이 활성화된 PC에서 음성 출력,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음성·점자 출력 가능

나) HWP파일로 작성 시 한글2010 이하 버전으로 작성

※ 한글2010 이상 버전에서 작성 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음성·점자가 출력되지 않는 현상 발생

다) 저장매체는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USB로 제출하되, 선거명·정당명·기호 등을 한글, 점자로 기재한 라벨, 네임태그 등을 저장매체에 부착하여 제출

※ 선거공보 발송봉투 투입을 위해 네임태그 등 사이즈는 가로 9cm, 세로 5cm 이내로 제작

라)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여 제출

※ 에어캡 등의 조치로 라벨 등을 가리지 않도록 유의하되, 필요시 에어캡 겉면에 라벨 부착

[저장매체에 부착할 라벨 등 작성 예시]

선 거 명	정당명	기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당	0

라. 선거공보의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1)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별(이하 “경력등”이라 함)이 거짓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첨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 첨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 선거공보의 경력등에 대한 이의제기 : **붙임 27**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마)]

- 2)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고 공고하며, 동 공고문 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첨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첨부함.
- 3) 선거공보의 내용상 경력등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한 고발이 있는 때라도 선거공보는 그대로 발송함.

2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신문광고(법 제69조, 규칙 제34조)

- 1) 광고주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2) 광고기간 : 2024. 3. 28.(목) ~ 4. 8.(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 3) 광고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4) 광고횟수 : 총 20회 이내

-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다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횟수는 1회로 봄.
- ※ 광고위치 및 색도·규격의 제한 없음.

5) 광고내용

- 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나) 광고주명 및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 근거 표시

6) 광고절차

가)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시기 :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서식 :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나) 광고계약 체결 : 일간신문사와 계약시 교부받은 인증서를 첨부

- ※ 광고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 중앙위원회에 광고게재 신고는 하지 않음.

나. 방송광고(법 제70조, 규칙 제35조)

1) 광고주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2) 광고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3) 방송매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 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이하 같음).

- 4) 광고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 ※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5)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 6) 광고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7) 방송이용일시 중첩 시 조정
 - 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받은 순서에 의하고
 - 나) 신청순서가 같은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 다)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함.
- 8) 방송광고의 실시통보
 - 가) 통보주체 : 해당 방송시설의 경영자
 - 나) 통보시기 : 해당 광고 방송·방영일 전일
 - 다) 통 보 처 : 중앙위원회
 - 라) 통보내용 :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

다. 연설방송

- 1) 후보자의 방송연설(법 제71조, 규칙 제36조)

가) 연설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연설향수 등

연 설 자	연설시간	매체별 연설향수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각각)	1회당 1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방송횡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다) 연설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되었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함.

라)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보

- 지 정 자 : 중앙위원회
- 지정·공고 : 2024. 3. 18.(월)까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 통 보 : 후보자등록신청 시

마) 방송연설 신고

- 신 고 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신고기간 : 방송일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29**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내용 :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
※ 중앙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방송시설·일시 등에 한함.

바) 비용산정

연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방송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규칙 제37조)

가)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나) 방송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연 설 자 : 추천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 자

라) 연설방송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마)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라.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법 제73조, 규칙 제38조)

가)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시설 포함)

나) 방송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라)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마) 원고 작성·제출

- 제출주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제출기한 : 2024. 3. 22.(금)까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함.
- 제출처 : 중앙위원회
- 제출부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
- 작성서식 : **붙임 30**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내]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원고 작성 시 참고사항

○ [공통사항]

- ▶ 텔레비전·라디오 원고의 경력란 기재 시 주요경력 2개만 발생순으로 기재(먼저 경력 위, 나중 경력 아래)하고, 전·현직으로 구분하여 경력 앞에 (전), (현)으로 기재 《예시 : (전) 국회의원》
- ▶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는 때에는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함.

○ [텔레비전방송용]

- ▶ 100자 이내(구두점 기타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 가능
- ▶ 직업(1종), 학력(1종), 경력(2종)의 자수는 (전), (현) 표기 포함하여 각각 22자까지 작성 가능
※ 온점, 방점, 쉼표, 괄호 등 문장부호와 공란은 반자(1/2)로 처리
- ▶ 사진(5cm×7cm)은 최근 3개월 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천연색 사진
※ [전자파일(사진규격 등 - **붙임 30**)〈별지〉 참조] 포함
※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사진은 방영하지 아니함.

○ [라디오방송용]

- ▶ 100자 이내에서 텔레비전용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

2)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규칙 제39조)

가)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나) 방송방법

- 중앙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송 가능

다)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3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1조, 규칙 제44조)

1) 대담·토론의 개념

가) “대 담”

1인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

나) “토 론”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

2) 개최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 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3) 개최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4) 초청대상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정당은 후보자 중 참석할 사람을 선임함.
- 5) 개최신고
- 가) 신고주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 나) 신고시기 : 개최일전 2일까지
- 다) 신고처 : 중앙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 라) 신고서식 등
- 신고서식 : 붙임 31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가)]
 - 첨부서류 : 붙임 32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나)]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
- 6) 초청 및 진행
- 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추천정당이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함.
- 다) 대담·토론회 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 라)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마)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정당·후보자 등은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도 같음).

7)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규칙 제45조)

1) 개최주체

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

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라) 인터넷언론사

2) 개최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24. 2. 10. ~ 3. 27.)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음.

3) 초청대상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정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후보자 포함) 중에서 참석할 사람을 지정함.

4) 진행방법(언론기관)

가)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함.

나) 정당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되 특정 정당의
대담·토론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다) 대담·토론회의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말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 라)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함.
- 마) 대담·토론 보도 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바)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5)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제82조의2)

1) 개최횟수 등

주 관	개최방법	개최횟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	2회 이상
대담·토론자		중계방송사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자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

- 2) 개최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3) 초청대상 선정기준
-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다)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4. 2. 27. ~ 3. 27.)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

4) 진행방법

-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2024. 3. 29.)까지 참석 여부에 따라 참석확인서 **붙임 33** [토론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불참사유서 **붙임 34** [토론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함.
- 나) 초청받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정당의 소속 정당명·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다) 대담·토론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라) 대담·토론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위 '3)'의 초청대상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 대상 정당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나) 대담·토론자는 대담·토론 시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할 수 있음.
- 다) 대담·토론회 영상은 유권자를 위하여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위 대담·토론회와 별개로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2024. 1. 11. ~ 3. 20.) 까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함(법 제82조의3).

4 그 밖의 선거운동

가. 말(言) 또는 전화 이용(법 제59조, 제109조)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 3)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됨.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 확장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 금지
-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나. 어깨띠 등 소품(법 제68조, 규칙 제33조)

1) 사용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2) 사용주체 등

구 분	후보자·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일반유권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관계조항	제68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명 칭	소품 등	소형의 소품 등
규 격	어깨띠 : 240cm × 20cm 이내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길이 25cm 이내 너비 25cm 이내 높이 25cm 이내
금 액	윗옷 : 6만원 이내	제한 없음
활용방법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비용부담	후보자의 선거비용	유권자 본인의 부담

☑ *후보자·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 등 사용주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법 제106조제2항)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기 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3) 장 소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 4) 방 법 : 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59조·제82조의5, 규칙 제25조의10)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시 기 : 언제든지
- 3)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문자·음성·그림말·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4)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 가) 주 체 : 후보자만 가능
 - 나) 전송횟수 : 총 8회 이내
 - 다)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
 - 신고기한 : 전송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
 - ※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 가능함.

라) 준수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 송 예 시 ✧

[선거운동정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정당 ○○○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 등) + 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마.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법 제59조, 제82조의5)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2) 시 기 : 언제든지
- 3) 방 법
 - 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선거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화상·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 가능한 형태라면 무방
- 4) 유의사항
 - 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전 송 예 시 ✧

선거운동정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정당 ○○○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mail 주소 등)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시 제한되는 행위(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함.
 -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바. 인터넷광고(법 제82조의7, 규칙 제45조의5)

- 1) 주 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위 주체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 2)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3) 기 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4) 내 용 :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 5) 방 법 :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사.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법 제82조의4)

- 1) 금지사항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가) 주 체 : 각급 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나) 사 유 :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 다) 조치방법
 -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요청

-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 ※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라) 후보자의 요청서식 : **붙임 35**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개)]

3) 후보자 등의 위법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

가) 통보권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사 유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다) 통 보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라) 통보서식 : **붙임 36**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

마) 조 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함.

※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4)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권자

- 위 '2)3)'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나) 이의신청기한

위 ‘2)·3)’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다) 이의신청 방법 :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후 서면 신청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
- 이의신청내용

라) 이의신청 신고(접수)처 : 삭제 등의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 정당의 자유와 활동 보장

- ▶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적 자유와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정당법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 제한 이유

- ▶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등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또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음.
- ▶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되,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와 선거기간중에 행해지는 일부 정당활동에 대하여는 정당기능 및 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 제한 내용

- ▶ 정강·정책 신문광고 및 방송연설의 제한
- ▶ 정강·정책홍보물 및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 제한, 당원집회 개최제한
-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
- ▶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II.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4. 1. 11.(목) ~ 3. 27.(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2) 횟 수 : 총 70회 이내
 -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 3) 매 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 4)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 없음)
- 5) 방 법 : 광고주명과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를 표시
- 6) 게재내용
 -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해당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다. 광고절차

- 1) 인증서 교부신청
 - 가) 신청시기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 나) 신청처 : 중앙위원회
 - 다) 신청서식 :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2)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4. 1. 1.(월) ~ 3. 27.(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금지됨.

나. 제한내용

- 1) 연 설 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 2)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3) 시 간 : 1회 20분 이내

4) 방송내용

가)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다)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1) 방송연설 계약체결(중앙당 ⇔ 방송사)

2) 방송연설 신고

가)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중앙위원회

다) 신고서식 : **붙임 29**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례]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라. 비용산정 및 부담

1)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해당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해당 공영방송사가 부담함.

※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의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방송사와 해당 정당이 협의하여 정함.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가. 제한기간 : 2024. 3. 28.(목) ~ 4. 10.(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2) 종 류 :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 3)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 4)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5) 게재내용
 - 가)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나)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 1)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 2)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 3)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4) 제출서식 : 붙임 3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가.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발간횟수 : 제한 없음

라. 발간형식 : 도서형태로 발간

마. 게재내용 등

1) 해당 정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2)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3)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1)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2)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사. 정책공약집 제출

1) 시 기 : 발간 즉시

2) 제출처 :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은 중앙위원회, 시·도당은 해당 시·도위원회)

3)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4) 제출서식 : **붙임 3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법 제139조)

가. 제한기간 : 2024. 3. 28.(목) ~ 4. 10.(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2) 발행횟수
 - 가)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 나)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 3)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4)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 또는 민원실·마을회관·아파트 입구 등 비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 1) 제출시기 : 발행 즉시
- 2) 제출처 : 중앙위원회
- 3)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4) 제출서식 : **붙임 3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23. 12. 12.(화) ~ 2024. 4. 10.(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함.
- ※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법에 따른 선거의 해당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라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다. 제한내용

- 1)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 2) 참석대상
 - 가) 소속당원에 한함.
 - ※ 주최당부 명의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음.
 - 나)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 3) 개최장소 표지첩부
 - 가) 매 수 : 5매 이내
 - 나)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가. 당원집회 신고 등

1) 기 간 : 2024. 1. 11.(목) ~ 3. 10.(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2)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3) 개최신고

가)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나) 신고자 : 주최당부

다) 신고처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서식 : **붙임 38**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 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4)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 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1매)를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1) 대상정당

정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2)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다. 당원집회 개최금지

1) 금지기간 : 2024. 3. 11.(월) ~ 4. 10.(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 금지내용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 집회로 보지 아니함.

※ 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바목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는 당원집회 개최금지기간 중에도 개최 할 수 있음.

8 당원모집 금지(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4. 3. 28.(목) ~ 4. 10.(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4. 3. 28.(목) ~ 4. 10.(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 1) 선 전 물 : 간판·현판·현수막(수량·규격 제한 없음)
- 2) 설치·게시장소 : 해당 정당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
※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선전물 첨부·게시 가능함.
- 3) 게재내용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
※ 위 게재내용 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4)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제3편

재 외 선 거

- I. 재외선거제도 일반
-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신고
- III. 국외선거운동



재외선거제도 일반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I. 재외선거제도 일반

1 재외선거 개요

가.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나. 재외선거권자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으로 구분

※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하여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필요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재외투표를 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만 있음.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2 재외선거 절차

가.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구 분	기 간	신고·신청방법
국외부재자	2023. 11. 12.(일)부터 2024. 2. 10.(토)까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 전자우편 •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 경유)
재외선거인	2024. 2. 10.(토)까지 선거일 전 6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에 한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전자우편 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 경유)

나. 명부 작성 및 열람

구분	기간	비고
명부작성	2024. 2. 21.(수) ~ 3. 1.(금)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시·군의 장이 작성 재외선거인명부: 중앙위원회에서 작성
명부열람	2024. 3. 2.(토) ~ 3. 6.(수)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시·군의 장이 정한 장소 또는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 본인의 정보에 한함. 재외선거인명부 중앙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인터넷으로만 열람 가능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 비치

다.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 1)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명부 열람기간 중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 작성권자에게 신청
- 2) 불복신청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불복신청은 할 수 없음.
- 3) 등재신청 : 선거권자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명부 작성권자에게 서면으로 등재신청

라. 명부 확정 : 2024. 3. 11.(월) 선거일 전 30일

마. 재외투표

- 1) 투표용지 작성·교부 :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등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
 - ※ '책임위원 등'이란 재외위원회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하여 두는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를 말함.
- 2)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 가) 재외위원회가 공관 또는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함.
 - 나) 공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3)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 가) 재외선거인등은 신고·신청 공관과 무관하게 전 세계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함.
 - 나) 재외위원회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되, 다른 위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함.
- 4) 투표기간
 - 가) 2024. 3. 27.(수) ~ 4. 1.(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재외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나)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파병부대 추가투표소의 경우는 해당 재외위원회가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5) 재외투표 참관

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인을 참관인으로 신고 [2024. 3. 24.(일) (선거일전 17일까지)]

나) 정당이 신고한 참관인이 없거나 하나의 정당만 투표참관인을 신고한 경우 재외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

※ 파병부대 추가투표소의 경우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

6) 재외투표 회송

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재외투표를 중앙위원회로 송부

나) 직항노선이 있는 공관은 직접 발송하고, 직항노선이 없는 공관은 직항노선이 있는 공관까지 인편 회송 후 발송

바. 재외선거 개표

1) 재외투표 접수 : 구·시·군위원회

2) 접수 마감 : 선거일[2024. 4. 10.(수)] 오후 6시

3) 개표절차

가)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 (국내 개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나) 중앙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위원회로 하여금 개표하게 할 수 있음.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신고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신고

1 재외투표참관인 신고

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1) 신고권자 :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 2) 신고기한 : 2024. 3. 24.(일)까지 **선거일 전 17일까지**
- 3) 선정·신고인원 수 : 재외투표소별* 재외선거인등 중 2인
* 공관투표소, 공관외 추가투표소, 파병부대 추가투표소를 말함
- 4) 신고처 : 재외위원회
※ 신고기한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해 온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간주, 즉시 해당 공관에 신고내역을 통지함.
- 5) 신고방법 : 재외투표참관인 신고서 **붙임 39**를 국제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법 제218조의2제2항, 제161조제7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8조① 각 호 해당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법 제53조① 각 호 해당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

나. 투표참관인 교체 등

- 1)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재외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음.

-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다. 투표참관 방법

투표참관인은 재외위원회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재외투표소내 참관인석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상황, 투표상황, 재외투표 인계·인수 상황 등을 참관함.

라. 투표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 1)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책임위원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 투표참관인은 재외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3) 참관 도중에 재외선거인등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회송참관인 신고

가. 회송참관인

외교부장관이 인계한 재외투표 외교행낭의 회송용봉투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참관함.

나. 회송참관인 선정·신고

- 1) 신고권자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 2) 신고기한 : 2024. 3. 27.(수)까지 선거일 전 14일까지
- 3) 선정·신고인원 수 : 정당별로 2인
- 4) 신고처 : 중앙위원회 (재외선거과)
- 5) 신고방법 : 붙임 40 신고서를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

회송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8조① 각 호 해당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법 제53조① 각 호 해당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법 제60조② 해당자)
※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4. 1. 1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다. 회송기간 : 2024. 4. 2.(화) ~ 4. 10.(수) ※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라. 참관장소 :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

마. 회송참관인 교체 등

신고한 회송참관인은 언제든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회송기간 중에는 회송장소에서도 교체신고할 수 있음.

바. 회송참관 방법

회송참관인은 중앙위원회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회송장소내 참관인석에서 재외투표 인수인계 과정 등을 참관함.



III

국외선거운동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Ⅲ. 국외선거운동

제 1 절 국외선거운동 일반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포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 분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없는 방법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음.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 이하 이 편에서 '위성방송광고'라 함.
-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1회 이내의 방송연설 가능
※ 이하 이 편에서 '위성방송연설'이라 함.
- 다.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가능
- 라.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합하여 총 8회 이내)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마. (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
- 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사. 후보자 정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

제 2 절 | 국외선거운동 방법

1 언론매체 이용 국외선거운동

가. 위성방송광고(법 제218조의14, 법 제70조)

- 1) 광고주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
- 2) 광고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3) 방송매체 : 위성방송시설(텔레비전 및 라디오)
 - ※ 위성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함.
- 4) 광고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위성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 ※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위성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5)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 6)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방송광고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7) 위성방송시설 이용일시 중첩 시 조정
 - 가) 당해 위성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 나)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위성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함)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다)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함.

※ 방송광고를 행하는 위성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정당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나. 위성방송연설(법 제218조의14, 법 제71조)

- 1) 연설기간 : 2024. 3. 28.(목) ~ 4. 9.(화) 선거운동기간 중
- 2) 방송매체 : 위성방송시설(텔레비전 및 라디오)
- 3) 연설 횟수 등

연 설 자	연설시간	매체별 연설횟수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각각)	1회당 1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방송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4) 연설내용

- 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나) 연설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다)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되었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함.

5) 방송연설절차

가)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보

- 지정자 : 중앙위원회
- 지정·공고 : 2024. 3. 18.(월)까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
- 통 보 : 공고 후 지체없이

나) 방송연설 신고

- 신고자 등

신 고 자	신고기한	신 고 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	방송일전 3일까지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41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래)]
 -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내용 :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
 - ※ 중앙위원회가 지정·공고한 방송시설·일시 등에 한함.

다) 비용산정

연설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방송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방송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다.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제2편 - I. 선거운동]의 [인터넷광고]에 대한 내용 참조

2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가.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의 제출(법 제218조의14, 규칙 제136조의13)

- 1) 제출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
- 2) 제출처 : 중앙위원회
- 3) 제출기한 : 후보자등록신청 시
- 4) 제출서식 : **붙임 42** [규칙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
 ※ 출력된 원고와 그 전자적 파일(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 규격 : 길이 30cm 너비 21cm 이내, 2면
- 6) 내용
 - 가) 1면에는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 경력을 기재함.
 ※ 1면에 게재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2면에 연이어 기재 가능함.
 - 나) 2면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나. 정당·후보자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 1) 작성·제공자 : 중앙위원회
- 2) 작성방법 : **붙임 43** [규칙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위로 작성
 ※ 정당이 정보자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면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하며, 2면은 '정당이 제출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로 작성함.
- 3) 제공방법
 - 가) 공관 게시판 게시
 - 나) 중앙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다)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함)

3 기타사항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법 제218조의14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중계방송(법 제218조의14⑥)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궐위선거 포함)의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제4편

정치자금

- I. 정치자금 일반
-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I

정치자금 일반

○ 선거비용의 제한 및 수입·지출

- ▶ 선거비용제한액 : 금5,280,381,600원
 - 산정방법 :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제한액산정비율 적용 후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
-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는 2024. 5. 20.(월)까지 **선거일 후 4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

○ 선거비용의 보전

- ▶ 보전요건
 - 당해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 ▶ 보전대상
 - 그 추천 정당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 ▶ 보전청구
 - 청구기한 : 2024. 4. 22.(월)까지 **선거일 후 10일까지**
 -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청구처 : 중앙위원회
- ▶ 선거비용 보전 : 2024. 6. 9.(일) 이내 **선거일 후 60일 이내**

I. 정치자금 일반

1 정치자금의 의의

가. 개 요

-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 창준위를 포함함),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그 밖의 모든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양분됨.
- 3) 이와 관련하여 정금법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데 있어서 그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나. 선거비용

- 1) 선거비용의 정의(법 제119조)
 - 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추천 정당 포함, ‘1’)에서 같음)가 부담하는 비용

- 나)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마) 위 ‘다)’ 및 ‘라)’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다)’ 또는 ‘라)’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법 제120조, 제218조의15)
- 가)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당내경선운동방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나) 선거에 관하여 국가 또는 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다) 선거사무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 기간 전부터 정당이 지출하여 온 경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 라)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마)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 바)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등의 비용
- 사)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구입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아) 선거일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 자)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 차)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소요된 비용(선거운동이 아님)

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1)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 때마다 ‘선거비용’ 과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여야 함.
-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일지라도 선거일 후 보전하지 않음.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정금법 제36조·제40조)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당비, 기탁금, 후원회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및 기관지 발행수입, 그 밖의 수입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1) 선거비용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선거사무소 유지비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수입·지출처리 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1) 수입·지출담당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임.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편 -

I. - 6.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등』 내용 참고

※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는 그 위임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단, 수입의 경우 위임 불가능)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 위임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2)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중앙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3) 정치자금은 경상보조금계정, 선거보조금계정, 여성추천보조금계정, 장애인추천보조금계정, 청년추천보조금계정, 보조금외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4)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5) 회계책임자가 위 '4)'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중앙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 등을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라.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 1) 보고의무자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 2) 보고대상기간 : 2024. 1. 1.(월) ~ 2024. 4. 30.(화) [선거일 후 20일]
- 3) 보고기한 : 선거일후 20일(2024. 4. 30.) 현재로 선거일후 40일(2024. 5. 20.)까지
- 4) 보고내용 :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 참조

마.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정금법 제44조)

- 1) 회계장부 등의 인계
 - 가) 시 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 나)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에게
 - 다) 인계서류 :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 2) 회계장부 등의 보존
 - 가) 보존기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나) 위탁보존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중앙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

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43조·제52조)

가. 조사기관 : 각급 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나. 조사시기

- 1) 정치자금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 2)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

다. 조사방법 : 질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 장소출입

4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가. 회계보고 공고 : 2024. 5. 27.(월)

나.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 1)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6개월 간
- 2) 열람대상 :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3) 사본교부기간 :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 4) 사본교부대상 : 열람대상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통장사본 제외

다.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누구든지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나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를 담다



II. 선거비용의 보전·반환 등

1 선거비용의 보전(법 제122조의2)

가. 보전요건

당해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나. 보전대상 비용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함.

다. 보전금액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

라.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 1)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 2)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3) 선거공보를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4)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6)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 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7) 청구금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입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비용
- 8)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입차구입·제작비용
- 9)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10)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전화·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11)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12) 정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13) 그 밖에 위 ‘1)~12)’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마. 보전청구

- 1) 청구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2) 청구기한 : 2024. 4. 22.(월)까지
- 3)청 구 처 : 중앙위원회
- 4) 청구방법 : **붙임 44** 서면에 의함

제5편

선거여론조사 안내

선거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팩스, 우편가능)
- ▶ 신고처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신고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선거여론조사결과 홈페이지 등록

- ▶ 등록의무자 :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 ▶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등록의무자에게 사전 통보 : 여론조사 의뢰자
- ▶ 등록내용 : 표본의 크기·조사방법·피조사자선정·전체 질문지·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
- ▶ 등록방법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제5편 선거여론조사 안내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예시] 국회의원선거의 ○○당 당내경선 후보자 호감도 조사, 당내 유력주자 중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적합도 조사, 국회의원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 교체의사에 대한 여론조사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법 제108조제3항, 제261조제3항)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기 한 : 선거여론조사(비공표·보도용 포함)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함.
- 3) 신 고 처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여심위”라 함)
 - 가)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나)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4)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가) 신고사항 : [5.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작성 예시] 참고

나) 서 식 : **붙임 45**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계 시 위 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메뉴
⇨ [자료실(신청서식)] 메뉴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다) 신고방법 : 서면으로 신고

-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경우 의뢰한 제3자(후보자등)가 신고
-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 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⑥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⑦ 위 ③~⑥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1월 중 결정·공표

나.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선거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제2항)

1) 주 체 : 누구든지

2) 시 기 : 2024. 2. 10.(토)부터 **선거일 전 60일부터**

3) 금지행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여론조사 금지

- ※ 다만,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 금지

[법 제108조제5항제1호, 선거여론조사기준(이하 이 편에서 “기준”이라 함)제6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사항

가) 경력 등을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는 행위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경력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직업 또는 주요 경력 사용

나)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②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4편. 선거여론조사 안내’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4편. 선거여론조사 안내’에서 같음.)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부정적 어휘 등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문항을 작성하는 경우
-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제6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사항

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나)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는 행위

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지 않은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거나 「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외

마. 사행성 조장 방법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3호)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바. 피조사자 성명 공개 불가(법 제108조제5항제4호, 기준 제7조제3항)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사.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의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 1) 주 체 : 2023. 12. 12.(화) ~ 2024. 4. 10.(수)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 2) 대 상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
- 3) 횟 수 : 4회 초과분부터 산입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법 제122의2).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

(법 제108조제11항제1호)

- 1) 주 체 : 누구든지
- 2) 내 용
 - 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의 경쟁력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등을 의미
 - 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주소·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금지

자. 동일인의 중복응답 또는 지시·권유·유도(법 제108조제11항제2호)

- 1) 주 체 : 누구든지
- 2) 내 용
 - 가) 선거여론조사에서 착신 전환 등 방법으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금지
 - 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도 본조에서 규율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에 포함

차. 기타 유의사항

- 1)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3)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 금지
 - ※ [예시] 입후보예정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문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선거여론 조사를 생성한 후 웹사이트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행위
- 4) 최소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기준 제4조제6항)	가중값 배율 (기준 제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조사: 1,000명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단위 조사: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별: 0.7 ~ 1.5 ▶ 연령대별: 0.7 ~ 1.5 ▶ 지 역 별: 0.7 ~ 1.5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가. 정당·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공표·보도 금지

(법 제108조제12항, 법 제256조제1항)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기간 : 2024. 4. 10.(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3) 금지행위(아래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 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 선거여론조사기관이란 법 제8조의9에 따라 관할 여심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를 말함.
 - 다)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나.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법 제108조제1항)

-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24. 4. 4.(목) ~ 4. 10.(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일전 6일부터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3)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위 공표금지 기간 중 공표하는 경우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선거여론조사기관 사전 통보

(법 제108조제7항, 기준 제15조)

1) 주 체 : 의뢰자

2) 내 용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조사결과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최고 1,500만원 부과(법 제261조)

마.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보도 금지

(법 제108조제8항, 기준 제17조)

1) 주 체 : 누구든지

2) 내 용

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하여야 함.

나) 관할 여심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바.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보도 금지

(기준 제4조)

- 1) 주 체 : 누구든지
- 2) 내 용 : 유선전화만을 사용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사.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 제18조의2)

- 1) 주 체 : 누구든지
- 2) 준수사항

가) 최초 공표·보도(12가지)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
-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 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나) 인용 공표·보도(5가지)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조사방법,
- 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 다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 공표·보도(5가지)

- ① 분석의뢰자, ② 분석기관·단체, ③ 분석대상(기간·건수·출처),
- ④ 분석방법, ⑤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4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여론조사 실시신고서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4항)

- 1) 신청자 : 신고내용에 대한 관할 여심위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
- 2) 서 식 : **붙임 46**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서식]
- 3)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 4) 신청처
 - 가)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나) 시·도여심위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 1)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 2) 서 식 : **붙임 47**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서식]
- 3)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 4) 신청처 : 위 ‘가. 4)’와 같음.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 1)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2) 인용·기각·각하 결정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
- 3) 법 위반 혐의 인정 시 해당 여심위에서 조치

기타 선거여론조사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배부하는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작성예시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홍길동	1900년 0월 0일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	02)000-0000	후보자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단체명)·(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00구 00로 0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00선거구명) 후보자 지지도 조사

4. 조사 방법 등

조사 지역	조사일시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공표·보도 여부	기타
서울	2024. 3. 28. 10:00~21:00 2024. 3. 29. 15:00~20:00	1,000명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전화 병행)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RDD(유선, 무작위 추출) ·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	부	

5. 전체 설문내용 : 별지 첨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홍길동 인

000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제6편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안내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제6편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 안내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나. 신청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마. 신청서식 : **붙임 48**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재, 경고·주의·공정보도 준수촉구 등 조치를 통한 피해구제

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가. 청구권자 :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나. 청구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다. 청구사유 :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라. 청구기간 :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즉시

- ※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 청구 가능, 단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 불가

마. 신청서식 : **붙임 49** [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바. 조 치 : 심의를 통해 각하·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결정내용 통지

- ※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 청구는 「이의신청 시스템(www.iendc.go.kr)」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iendc.go.kr) 참조

•• 부 록 ••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 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주체 및 대상
2024. 1. 1.(월)부터 2024. 3. 27.(수)까지	정강·정책 방송연설 ※ 연설신고 : 방송일전 3일까지신고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4. 1. 11.(목)부터 2024. 3. 10.(일)까지	당원집회 신고	정당 → 관할구·시·군위원회
2024. 1. 11.(목)부터 2024. 3. 27.(수)까지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전까지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4. 3. 21.(목)부터 2024. 3. 22.(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4. 3. 22.(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4. 3. 24.(일)까지	재외투표참관인 신고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 재외위원회
2024. 3. 27.(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선정·신고	교섭단체 정당 →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후 ~ 4. 9.(화)까지	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중앙당 → 중앙위원회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선임(해임)·교체 신고	중앙당·선거사무장 → 중앙위원회
	정당·대표자·후보자·선거사무장 인장의 인영신고	중앙당 → 중앙위원회
	후보자 방송연설 신고(방송일전 3일까지)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4. 3. 28.(목)부터 2024. 4. 10.(수)까지	정강·정책홍보물 제출 정당기관지 제출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24. 3. 29.(금)까지	선거공보(접자형 포함) 제출	정당 → 구·시·군위원회
2024. 4. 10.(수)	투표·개표	
2024. 4. 22.(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중앙당
2024. 5. 20.(월)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회계책임자 → 중앙위원회
2024. 6. 9.(일)이내	선거비용보전	중앙위원회 → 중앙당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신고자 (후보자)	①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② 선거구명	
	③ 소속정당명	○○당	④ 성 명	홍길동
⑤ 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 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 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 석 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원 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재산
<p>본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후보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후보자재산 신고사항					
①소 속 정당명	○○당	②선거명및 선거구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③성 명	홍길동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비 고
토지	본인	임야	경기도○○시 ○○동 산 ○○번지 (7,000㎡)	5,000	
		임야	경기도○○시 ○○동 산 ○○번지 (6,000㎡중 상속지분 3,000㎡)	7,000	사실상 소유 (등기명의인 ○○○은 망부, 상속지분 1/2)
		전	경기도○○시 ○○동 ○○번지 (5,000㎡)	5,000	
		대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500㎡중 공유지분 500㎡)	39,600	공유 (지분1/3)
	배우자	잡종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1,650㎡)	4,950	
	부	전	○○광역시 ○○구 ○○동 ○○번지 (2,100㎡)	4,000	
		묘지	○○도 □□시 ○○동 ○○번지 (245㎡)	5,000	일반묘지
	모	답	○○광역시 ○○구 ○○동 ○○번지 (2,600㎡)	3,250	
	장남	잡종지	○○광역시 ○○구 ○○동 ○○번지 (3,500㎡)	8,200	
	삼남	전	○○도 ○○시 ○○면 ○○리 ○○번지 (1,200㎡)	5,000	
소 계				87,000	
건물	본인	주택	서울 ○○구 ○○로 ○○ (건물 90㎡/대지 300㎡)	150,000	
	배우자	전세권	서울 ○○구 ○○로 ○○ (건물 60㎡/대지 10㎡-사무실)	20,000	전세보증금
	부	아파트	○○ 북구 ○○로 ○○ ○○아파트 (건물 94.76㎡)	150,000	등기미필
	모	빌딩	○○ 중구 ○○로 ○○ ◇◇빌딩 (건물165㎡중80/대지660㎡중 330)	500,000	공유(지분1/2)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 비 고
	장 남	아파트	○○○○구○○로○○○○아파트 (건물 94.76㎡)	60,000 (불입금액)	분양가액 120,000
		아파트	서울○○구○○동○○번지○○아파트 (건물 84.99㎡)	70,000 (불입금액)	분양가액 100,000
	장 녀	임차권	○○남구○○로○○○○빌라 (건물 60㎡)	45,000	임차보증금
	차 녀	오피스텔	서울○○구○○로○○△△빌딩 (건물 4.07㎡/대지 9㎡ - 13평형)	33,929	사실상소유 (등기명의인 ○○○는 차녀의 외삼촌)
소 계			1,028,929		
부 동 산 준용권리	본 인	광업권	철광석(강원○○군○○면○○리○○번지) 존속기간(2000. 1. 1 ~ 2024. 12. 31)	50,000	
		자동차	2005년식, 아반떼 XD, 1498cc, 서울1가1234 (취득가액 : 10,000천원)	1,500	
	배우자	어업권	제1종양식어업(강원 삼척시○○면○○리○○번지) 존속기간(2015. 1. 1~2024. 12. 31)	30,000	공유(지분½)
		중 기	불도우저, 삼성21C37T, 08년, 경기01가1234	23,000	
	부	선 박	강선, 어선, 동해호, 70톤, 99년육포80-3735	250,000	
		항공기	회전익, B0105CBS, 보잉사, 12년	300,000	
		항공기	비행기, TU206E, 세스나스, 11년	300,000	
	장 남	선 박	목선, 어선, 동남호, 30톤, 15년 P8851234	300,000	
소 계			1,254,500		
현 금	본 인	현 금		12,750	
	배우자	현 금		10,000	
	장 녀	현 금		11,000	
소 계			33,750		
예 금	본 인	예 금	○○은행 5,000 △△은행 5,000	10,000	
		예치금	○○비트 500 △△비트 500	1,000	
	배우자	예 금	○○은행 2,000 △△은행 1,000 □□ 은행 7,000	10,000	
	장 남	적 금	○○은행	6,000 (불입금액)	
		예탁(수)금	○○증권	5,000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 비 고
	장 녀	신 탁	○○투자신탁	5,000	
		적 금	○○공제회	5,000 (불입금액)	
	삼 남	보 험	○○보험	12,000 (불입금액)	
소 계			54,000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본 인	예 금	○○은행	5,000	
소 계				5,000	
증 권	본 인	상장주식	○○은행 3,000주, ○○증권 100주	40,000	최종가액 (2023.12.31)
		비상장주식	○○전자 1,000주	5,000	
		국 채	(국민주택채권2종) 기획재정부	5,000	
		공 채	(도로공사채) 한국도로공사	5,000	
		금융채	(산업금융채) 산업은행	5,000	
		주식매수 선택권	○○전자 5,000주(390,000), ○○제지 10,000주(400,000)		
소 계			60,000		
채 권	본 인		사인간의 채권	10,000	2024.12.31.만기
소 계				10,000	
채 무	본 인		사인간의 채무	△ 20,000	
			전세보증금	△ 30,000	2024.6.30.만기
	배우자		○○은행 대출금	△ 10,000	2025.6.15.만기
소 계				△ 60,000	
금 및 백금	본 인	금	24K (300g)(취득가액 : 4,000천원)	6,000	
	배우자	금	24K (500g)(취득가액 : 8,000천원)	9,380	
소 계				15,380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 비고
보석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2캐럿(무색)(취득가액 : 10,000천원)	12,000	
		진주목걸이	5mm(20개-백색)	7,500	
소계				19,500	
골동품및 예술품	본인	동양화	설촌(69.5×182, 청전 이상범, 1964년작) 1점	20,000	
	부	동양화	매조도(24×21, 단원 김홍도,조선말기작) 1점	150,000	
	모	도자기	백자(29×125×11.5,작자미상,조선초기작) 1점	68,000	
소계				238,000	
회원권	본인	골프	○○컨트리클럽(경기 용인)	25,000	
	배우자	콘도	○○콘도미니엄(20평형, 강원 홍천)	5,000	
	장남	헬스	○○헬스클럽	18,000	
소계				48,000	
지식 재산권	본인	특허권	관아음부위의 포장방법 061758호 (2005. 3. 23.~2025. 3.22.)		
	부	실용신안권	컴퓨터전용테이블의 설치판 조립장치 071961호 (2015. 7.1. ~ 2035. 6.31.)		
		디자인권	등록번호139961호(2012. 11.12. ~ 2032. 11.11.)		
		상표권	등록번호261655호(2012.11.12. ~ 2042. 11.11.)		
		저작권	자화상(미술저작물) 등록번호931234호 (1999. 2. 5 ~)		
소계					
가상자산	본인	가상자산	○○비트,○○코인,B***,000*** 42,000/ 1.5개 (63,000)	63,000	
소계				63,000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부	합자회사	○○합자회사, 연간매출액 : 1,000,000 출자지분 : 20%, 출자금액 : 50,000	50,000	2000년도 출자 (1945년 부친설립 유증받음)
소계				50,000	
비영리 법인에 출연재산	본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학원(서울 ○○구 소재)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2008년 출연
	배우자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시 ○○구 소재)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2000년 출연
소계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 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 비 고
합 계	차 남				고지거부 (회사원으로 독립생계유지)
	본 인			420,850	
	배우자			121,830	
	부			1,209,000	
	모			571,250	
	장 남			467,200	
	장 녀			66,000	
	차 녀			33,929	
	삼 남			17,000	
	삼 녀		재산신고사항 없음.		
	총 계				2,907,059

2) 작성요령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가. 부동산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나. 동산 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교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현금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백금 ⇒ 보석류 ⇒ 골동품·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명·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출연한 재산』 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직계비속은 나이순으로 기재함.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각 항 목 별 기 재 요 령

■ “실거래가격”이란?

토지, 주택,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1. 토 지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매수자가 잔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항목이 아닌 '나. 건물'항목에 기재하고,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을 기재함.

라. “가액”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총금액”을 기재함.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세부 주소 포함)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2 (1평은 $3.3m^2$)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 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 분양권의 경우에는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함.
 -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 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기재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m^2)”으로 산정함.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총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건물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②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 ④ 선 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 ⑤ 항 공 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다. “가액”란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4. 현 금(수표포함)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둠.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5. 예 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 항목과 “6. 정치자금” 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 항목과 “6” 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하고, 각종 공제회·상조회 불입금도 기재함.
- 마. “비고”란
 -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문중회비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명의로 된 예금이 문중회비일 경우 ⇒ "문중회비"라고 표시함)
 -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함.

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가. 신고대상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각 소유자별로 “5. 예금” 항목과 “6. 정치자금” 항목의 예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 항목과 “6” 항목을 구분해서 각각 신고
- 나. “재산의종류”란 : “예금”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7. 증 권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 나. “재산의종류”란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등으로 기재함.
-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임.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의4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

8. 채 권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신고함.

-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1. 토지” 또는 “2.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9. 채 무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둠.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10. 금 및 백금

-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 항목에 기재함.
-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11. 보 석 류

- 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12. 골동품 및 예술품

-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 연도)” 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cm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13. 회원권

-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 등을 기재함.
-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 ※ 다만,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함.

14. 지식재산권

-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음.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15. 가상자산

- 가. 신고대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나. “재산의종류”란 : “가상자산”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거래소명, 가상자산명, 심볼, 종목코드, 수량을 기재함.
- ①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기재함.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기재함.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서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함.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기재함.

②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가상자산 ‘가액’란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재 관련 사업장별 참고 위치 〉

◦ 두나무 주식회사	◦ 두나무(업비트) [www.upbit.com]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이용자 가이드 > 이용안내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공시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빗썸코리아(빗썸) [www.bithumb.com] 홈페이지> 고객센터 > 일평균시세
◦ 주식회사 코빗	◦ 코빗 [lightning.korbit.co.kr] 홈페이지> 지원 > 일평균가액 공시
◦ 주식회사 코인원	◦ 코인원 [coinone.co.kr] 홈페이지> 고객센터 > 세금관련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 참고 : 국세청 가상자산평가를 위한 가상사업자 고시(제2021-58호)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둠.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

나.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1)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후 보 자	①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② 선거구명	
	③ 소속정당명	○○당	④ 성 명	홍 길 동
⑤ 첨부서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등의 병역사항(별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적증명서 2부(본인 및 장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무확인서 1부(차남)				
본인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년 월 일</div> 위 후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 지〉

본인 등의 병역사항					
① 소속 정당명	○○당	② 선거명 및 선거구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③ 성명	홍길동
④ 본인과 의 관계	⑤ 성명	⑥ 생년월일	⑦ 병역사항	⑧ 비고	
본인	홍길동	196X.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군 ○복무부대 : 25사단 ○계급 : 병장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1987.12.14. ○전역일자 : 1990.6.15. ○전역사유 : 만기 		
(장남)	홍진현	199X. X.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6.12. 2급 현역병입영대상 ○2015~2020 입영연기(유학) ○2021.9.15. 소집후 귀가 ○2021.11.12. 5급 전시군로역(사시) 	질병명등의 비공개요구	
(차남)	홍진선	200X.11.XX.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00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2023.10.21. 		
	“이	하	빈	칸”	

2) 작성요령(병역사항)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 가) “소속정당명”란은 후보자의 추천정당명을 기재함.
- 나)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함.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함.

〈〈 기재요령 〉〉

1.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
- 다)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함.

(1) 대상자별 신고대상 병역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보충역·대체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인 경우),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 (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 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병역판정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 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

(2) 여성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란에 “병역의무 없음”으로 기재

※ 다만, 여성후보자로서 병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사실대로 기재

라) “병역사항”에 관한 구체적 작성예시는 다음 면 참조

마) “비고”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함.

“⑦ 병역사항”란 작성예시

※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함.

구 분		병역사항 기재(예)	기재요령
복무를 마친 사람	만 기 제대자 (소집 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해군 ○복무부대(기관) : 제1함대사령부 ○계급 : 병장 ○병과(군사특기) : 15(전탐병) ○입영일자 : 2002.3.11. ○전역일자 : 2004.6.19. ○전역사유 :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해·공군으로 구분
	복 무 이탈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00사단 ○계급 : 이병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1971.3.5. ○전역일자 : 1977.5.1. ○전역사유 : 탈영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영일자 : 사병은 입영일자, 장교는 임관일자 ○전역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은 전역일자 - 사회복무·산업기능(전문연구) 요원 등은 소집해제 일자
복무중인 사람	현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00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병과(군사특기) : 1111(소총수) ○입영일자 : 2023.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과(군사특기) : 주특기부호 또는 주특기명
	보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대(기관) : 경기 과천시청 ○계급 : 일병 ○소집일자 : 2023.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기재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6.12. 2급 현역병입영대상 ○ 1994~1999 입영연기(유학) ○ 2000.9.15. 소집후 귀가 ○ 2000.11.12. 5급 전시근로역(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기관 : 해당복무관서 또는 업체명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전시근로역 등으로 기재 ○병역처분사유 :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아, 사생아, 국외이주, 장기대기, 독자 등 ※ 질병이라고 기재시 괄호안은 질병명 기재
	기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7.22. 입영기피이후 병적기록이 없음. ○ 1989년 병역의무종료 	
복무대기중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처분일자 : 2023.11.28. ○ 신체등급 : 1급 ○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병역준비역 ○ 2024년 병역판정검사대상 	
병적기록 없는 사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제정(49.8.6.)이전으로 병적부작성안됨 ○ 0000년 병역의무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 0000년 병역의무종료 	

3) 참고자료 - 병적증명서(서식)

병적증명서

발행번호		유효기간	
용도	[]공직자 등 신고용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대체) 복무 여부	[] 복무를 마친 사람 []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병역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3) 참고자료 - 복무확인서(예시)

담당자	계장	과장	전화번호
			053-111-2222

담당부서	부관과
책 임 자	대위 김□□
담 당 자	중위 박□□
연 락 처	070-121-1221

복 무 확 인 서

제○○-○○호

소 속 : ○○○부대 정비대대

계 급 : 상병

군 번 : 23-00001245

성 명 : 홍○○

주민등록번호 : 01 -1234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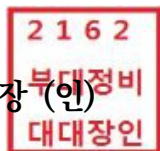
입 대 일 : 2023년 월 일 전역 예정일 : 2024년 월 일

전 입 일 : 2023년 월 일 용 도 : 부모 공직선거 출마용

상기명 병사는 당 부대에 복무중인 자임을 확인함.

2024. 2. 21.

○○○○부대 정비대대장 (인)



다.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 작성예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선 거 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	후보자성명	홍길동
납 세 신 고 사 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p>첨부서류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p> <p>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 위 후보자 홍길동 (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별 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속 정당명		○○당			선거명 (선거구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명		홍길동	
(단위: 천원)														
연도	후보자와의 관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안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안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안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 체납액	
2019 년도	본인	1,500	-	-	380	200 (2022. 2. 5.)	-	200	-	-	2,080	200 (2022. 2. 5.)	-	
	배우자	-	해	-	당	-	없	음	-	-	-	-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해	-	당	-	없	음	-	-	-	-	-	
	손자1	-	해	-	당	-	없	음	-	-	-	-	-	
소 계	1,700	-	-	400	200 (2022. 2. 5.)	-	350	-	-	2,450	200 (2022. 2. 5.)	-		
2020 년도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100	-	-	-	-	-	-	-	100	-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	해	-	당	-	없	음	-	-	-	-	-	
	손자1	-	해	-	당	-	없	음	-	-	-	-	-	
소 계	1,800	-	-	400	-	-	350	-	-	2,550	-	-		
2021 년도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150 (2023. 2. 5.)	-	-	-	-	-	-	500	150 (2023. 2. 5.)	-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장남	200	-	-	20	-	-	150	-	-	370	-	-	
	차남	100	-	-	50	-	-	200	-	-	350	-	-	
	손자1	50	-	-	10	-	-	-	-	60	-	-		
소 계	2,350	150 (2023. 2. 5.)	-	460	-	-	550	-	-	3,360	150 (2023. 2. 5.)	-		
2022 년도	본인	1,500	-	-	380	-	-	200	-	-	2,080	-	-	
	배우자	500	-	-	100	-	-	150	200	200	750	200	200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장남	200	-	-	20	-	-	-	150 (2023. 4. 30.)	-	220	150 (2023. 4. 30.)	-	
	차남	300	-	-	10	-	-	500	-	-	810	-	-	
	손자1	400	-	-	200	-	-	-	-	600	-	-		
소 계	2,900	-	-	330	-	-	650	350	200	4,460	350	200		
2023 년도	본인	1,500	-	-	380	-	-	1,000	-	-	2,880	-	-	
	배우자	-	해	-	당	-	없	음	-	-	-	-	-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장남	200	-	-	20	-	-	-	-	220	-	-		
	차남	-	해	-	당	-	없	음	-	-	-	-		
	손자1	-	해	-	당	-	없	음	-	-	-	-		
소 계	1,700	-	-	400	-	-	1,000	-	-	3,100	-	-		
합 계	본인	7,500	-	-	1,900	200 (2022. 2. 5.)	-	1,800	-	-	11,200	200 (2022. 2. 5.)	-	
	배우자	1,100	150 (2023. 2. 5.)	-	100	-	-	150	200	200	1,350	350	200	
	부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신고거부	-	-	
	장남	1,000	-	-	100	-	-	450	150 (2023. 4. 30.)	-	1,550	150 (2023. 4. 30.)	-	
	차남	400	-	-	60	-	-	700	-	-	1,160	-	-	
	손자1	450	-	-	210	-	-	-	-	660	-	-		
합 계	10,450	150 (2023. 2. 5.)	-	2,370	200 (2022. 2. 5.)	-	3,100	350	200	15,920	700	200		

2) 작성요령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요령

가) '후보자와의 관계' 란

- (1)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직계비속은 출생순으로 “장남·장녀·차남”, “손자1·손녀1·손녀2”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
- (2) 신고대상자만 기재(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나) “세금 납부·체납액”란

- (1)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때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 (2)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직계비속은 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 (3) 납부 및 체납세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되, 금액은 백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

구 분	납부기간	납부세액	체납세액
소득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input type="checkbox"/> 2018 ~ 2022년 사이 발생한 소득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8년도 분은 2019년도 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9년도 분은 2020년도 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0년도 분은 2021년도 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1년도 분은 2022년도 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년도 분은 2023년도 란에	당해 연도에 그대로기재
재산세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과세기준일 : 6월 1일	<input type="checkbox"/> 2019 ~ 2023년부과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해연도 부과분은 당해연도 란에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의 경우(250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 과세기준일 : 6월 1일	<input type="checkbox"/> 2019 ~ 2023년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해연도 발생분은 당해연도 란에	

- (4) 당해연도 과세분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에 완납한 일자를 기재
 ※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
 - (5)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는 본인인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기재
-

3)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가)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따라 신고서 작성
- 나) 증명서 발급 시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을 연도별로 각각 구분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되도록 요청
- 다)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시 후보자등 신고대상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발급신청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라)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발급 시 하나의 구·시·군청에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지”란에 이를 모두 기재하고, “납부·체납세액”란에는 이들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무방

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는 본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기재
- 거래한 모든 금융기관에 가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후보자 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신청함.
- 동일한 금융기관(지점이 다른 경우 포함)에 2개 이상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1매로 발급(계좌번호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받을 수 있음.

4) 참고자료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예시)

발급번호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처리기간	
				2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후보자와의 관계		
	-		()후보자의 ()		
주 소			용 도	공직선거후보자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세 목	납부세액	체 납 이 력		현 재 체 납 액
			체납액	완납일자	
2018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2019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2020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2021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2022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2023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합 계	소 득 세				
	종합부동산세				

위와 같이 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4) 참고자료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예시)

발급번호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처리기간
					2일
납 세 의 무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의()	사 용 용 도	공직선거후보자용	
납부·체납사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납부세액	체 납 이 력		현 재 체 납 액	비 고
		체납액	완납일자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위와 같이 납부·체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시장·구청장·군수 인					

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작성예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		후보자성명	홍길동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당선 또는 낙선 여부
1995년	□구의원선거	□□구○선거구	□□□당	당선
2010년	□□구의원선거	□□구○선거구	□□□당	당선
2014년	○○시장선거		무소속	사퇴
<p>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7호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3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후보자 홍길동 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 1.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선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경력을 기재함.
2. “소속정당명”란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하여 후보자 등록당시 추천정당명을 기재하며, 무소속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기재함.
3.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당선 또는 낙선 여부”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라고 기재함.

[참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기관 등

제출서류		발급기관·방법
병역사항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 전국 지방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신청으로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제3자(위임장 필요)의 방문 ◇ 처리기한 : 당일 발급 가능
	복무확인서 (복무증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자 : 해당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 전국 세무서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제3자(위임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필요)의 방문 ◇ 처리기한 : 2일 이내
재산세 납부· 체납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 전국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구·시·군에서는 FAX민원신청으로 발급 가능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제3자(위임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필요)의 방문 ◇ 처리기한 : 당일 발급 가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 전국 경찰관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보서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 ◇ 처리기한 : 2일 정도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력 : 출신학교, 교육청, 공인된 증명서 발급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신청으로 발급 가능) - 외국학력 : 출신학교 또는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발급기관 ◇ 최종학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그 밖에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3 각종 신청·신고 제출 서식 목록

1.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 1-1.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 1-2. 후보자 본인승낙서
 - 1-3. 후보자 인영신고서
2.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서
3.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4.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5.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5-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5-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6.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7.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8.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9.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0. 후보자 사퇴신고서
11.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12. 개표참관인 신고서
13.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1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별지] 정당선거사무소 인영 등
16.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17.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18.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19.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20.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21.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 신고서

22. 인영신고서
23.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24. 선거공보 제출서
25. 선거공보 정정·삭제 요청서
26.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27.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28.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29.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30.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별지] 경력방송용 사진파일 규격
31.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32. 대담·토론회 참석승낙서
33.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34.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35.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36.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사항 통보서
37.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제출서
38.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39. 재외투표참관인 신고서
40. 회송참관인 신고서
41. 정당의 위성방송 연설신고서
42.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4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44.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45.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46.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47.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48. 이의신청서
49. 반론보도 청구서

붙임 0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

1. 정당명
2.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수 인
3. 추천절차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덧붙임 서류 : (1) 후보자명부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
 (3) 후보자본인승낙서 통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통
 (5)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통
 (6)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통
 (7)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통
 (8)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9)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통
 (10)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통
 (11) 인영신고서 통
 (12) 기탁금 입금표 통
 (13)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통(해당자에 한함)
 (14) 사진 매(5CM X 7CM)

주 : “추천절차”란은 「공직선거법」제47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당

추천 순위	후보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별	주소	직업	학력	경력	비고

- 주 : 1. 후보자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을 적어야 하며, 학력을 적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등록신청서와 후보자명부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5. 후보자명부가 2매 이상일 때에도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바)]

후보자 본인승낙서

1. 소속정당명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직 업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2024년 월 일

승낙인 ○ ○ ○ (인)

○○당 귀중

인영신고서

	인 영
후 보 자 ○ ○ ○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후 보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02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적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추천선거구명
2. 후보자 성 명 (한 자)
3. 당적변동연월일
4. 당적변동내용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주 : 당적변동내용은 당적이탈·변경, 이중당적보유 등으로 기재합니다.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신고자 (후보자)	① 선거명		② 선거구명
	③ 소속정당명		④ 성 명
⑤ 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 고 사 항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부 동 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 금 <input type="checkbox"/>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 권 <input type="checkbox"/> 채 권 <input type="checkbox"/> 채 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 석 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 원 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input type="checkbox"/>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
본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②선거구명”란을 공란으로 둡니다.

붙임 03 [별지]

후 보 자 재 산 신 고 사 항					
①소 속 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 명		
④재산의 구 분	⑤후보자와의 관 계	⑥재산의 종 류	⑦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 원)	⑨비 고
합 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에 선거구명은 미기재

붙임 04 [별지]

본인 등의 병역사항				
①소속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 명	
④본인과의 관계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병역사항	⑧비고
본 인				

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

- ③항 “성명”란은 신고의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 미만의 남자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아들, 손자, 외손자로 구분
 2.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3. 손자,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외손자”로만 기재
- 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⑦항 “병역사항”란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⑧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붙임 05 [별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속정당명		선거명 (선거구명)				성명							
(단위: 천원)													
연도	후보자와의 관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재 납액
2019 년도													
	소계												
2020 년도													
	소계												
2021 년도													
	소계												
2022 년도													
	소계												
2023 년도													
	소계												
합계													
	합계												

- 주 : 1. “후보자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합니다.
2.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소득세등”이라 함)는 천원단위(백원단위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4. 소득세등의 납부·체납증명서 제출대상자 중 납부·체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5. 해당연도 과세분 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안에 그 완납일자를 기재합니다.
6.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붙임 5-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2일
후 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증명발급대상 직계 존비속	명단 별지	* 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은 별지로 첨부하여 후보자(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도장)의 서명 또는 도장을 간인 날인			
증명발급대상기간	최근 5년간				
원천징수 소득세 발급 미희망 세목 ^{주1}					
제 출 처	선거관리위원회	용 도	공직선거후보자용		
위 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임 장(위임하는 경우)					
위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 (성명)			(인감도장)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p>※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중 발급을 원하지 않는 세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원천징수 세액은 제외합니다</p> <p>2.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위임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위 위임장과 함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여 드립니다.(후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p> <p>3.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붙임 5-1 [별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서명 또는 날인)	본 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2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배우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서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4	(서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5	(서명 또는 날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6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대리인(위임받은 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계	명			

붙임 5-2 [별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서명 또는 날인)	본 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2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배우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서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4	(서명 또는 날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5	(서명 또는 날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일련 번호	성 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6	(서명 또는 날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7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대리인(위임받은 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계	명			

붙임 08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국내 정규 학 력			
학력(수학기간)	증명서명	발급번호	발급기관명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학력(수학기간)	증명서명	발급번호	발급기관명
<p>덧붙임 : 증명서(외국 학력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포함함) 부.</p> <p>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 후보자 ①</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 1.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을 말하며,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에 한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력은 출신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10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 소속 정당명
3. 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퇴사유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 ○ ○ ①인

○○당이 추천한 위의 후보자가 사퇴함을 승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 당 ①인
대표자 ○ ○ ○ 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후보자의 사퇴승인은 정당추천후보자에 한함.

(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2. 참관인 인적사항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참관일자	비고

(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	○		○		당	인
	{	대	표	자	○	○	○
	{	후	보	자	○	○	○
	{	선	거	사	무	장	○
		○	○	선	거	연	○
		○	○	선	거	연	○
		○	○	선	거	연	○
		○	○	선	거	연	○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비고”란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사전투표참관인은 신고시 “참관일자”칸에 참관인별로 참관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가)]

개표참관인 신고서

1.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2. 참관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업	비고

위와 같이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 인
	○ ○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이 신고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개소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제1개표소 개표참관인신고서).
3. 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가)]**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정 당 명 :
-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정당선거사무소장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때. 끝.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표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0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5 [별 지]

정당선거사무소 인영 등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영

붙임 16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임)·(겸임)·(변경) 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입용				
지출용				
<p>「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서) 				
<p>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입니다. 				

붙임 17 [별지]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p>본인은 ○○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 ○ 인</p> <p>○○당 대표자 귀하</p>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p>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분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변경전	수입용			
	지출용			
변경후	수입용			
	지출용			
<p>「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 당 인]</p> <p style="text-align: right;"> [대표자 ○ ○ ○ 인]</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p>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대표자 입니다.</p> <p>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p>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거비용제한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p>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당 대표자 ○ ○ ○ ①</p> <p style="text-align: right;">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①</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p>주 : 1. 회계책임자의 변경 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p>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약정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가 합니다.</p>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p>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 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입회자(직위) [○ ○ 당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대 표 자 ○ ○ ○ 인]</p>				
<p>주 :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p> <p>2. “인계·인수내역”란에는 재산, 정치자금의 사용잔액,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구입·지급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원부포함)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p> <p>3. “입회자”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날인합니다.</p>				

붙임 2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내)]**(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정 당 명 :
2. 신고내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공동선임)· (해임)·(교체)	연월일	일련 번호	비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덧붙임 : 1. 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2.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 ○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들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들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2.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4. “일련번호”란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5.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6.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신고인이 해당 신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선거사무원수 미산입” 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7.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 ○ 당	인 영
○ 대 표 자 ○ ○ ○ 당 ○	인 영
선 거 사 무 장 ○ ○ ○	인 영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분명 : (직업 :)

나. 성명 :

다. 생년월일(성별) :

라. 주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2.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배우자·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적용합니다.
- 3.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붙임 24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나)]

선거공보 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 정당명 :
3. 제출내역

품 명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	비고
책자형 선거공보	일반형						
	점자형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인 { ○ ○ 당 인 }
 { 대 표 자 ○ ○ ○ 인 }
 { 선 거 사 무 장 ○ ○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3.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4. 저장매체(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로 전환·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합니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고”란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만,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의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에 추가로 적습니다.

붙임 26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1. 선거명 :
2. 정당명 :

상기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아래의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음성파일 (MP3, WMA 등)	텍스트파일 (DAISY, HWP, DOC, TXT)	비고
제출형식			

※ 디지털 파일의 제출형식에 해당되는 란에 “○”로 표기

년 월 일

위 정당 대표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거법상 신 분	
	전화번호			
이의제기 대 상 자	선 거 명		후보자성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공직선거법」 제65조제12항)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제기자 ○ ○ ○ 인</p> <p>붙 임 : 증명서류 1부</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 1. “선거법상 신분”란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선거인 등을 적습니다.
 2. “이의제기 내용”란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 및 그 게재내용을 적습니다.
 3.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28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교 부 신 청 수 량	비 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성명	연설자		방송시설구분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부터 ~까지)	소요시간	비고
	명순	부위 주소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71조 제10항)·(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이 신고서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신고시에 사용합니다.
2.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에 있어서는 “명부순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30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내)]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력방송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기 호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성명 (한자)
4. 생 년 월 일 . . 생(만 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덧붙임 : 사진 매.

2024년 월 일

제출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사진은 텔레비전방송용이며 5센티미터×7센티미터의 천연색사진으로 하되,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하며, 그 매수는 텔레비전방송시설의 수에 상당하는 매수이어야 합니다.

경력방송용 사진파일 규격

1. 디지털 사진(jpg파일) 촬영 규격

- 해상도 : 600dpi
- 5인치 x 7인치 (12.7cm x 17.8cm)

2. 원고 부착용 사진 규격

- 명함판 사진 부착

※ 디지털 사진과 인화하여 원고에 부착하는 사진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 준수 사항>

- 넥타이선의 배꼽 아래 까지 촬영
- 양쪽 어깨선이 다 보이도록 촬영
- 얼굴과 몸은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
- 인물의 배경은 흰색(white)으로 촬영
- 칼라사진



붙임 31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가)]**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1. 주 최 자**

가. 단 체 명 :

나. 대표자성명 :

다.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라. 회 원 수 :

마. 설 립 근 거 :

2. 개최일시·장소

가. 개 최 일 시 : 2024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 최 장 소 :

다. 참석예정자수 :

3.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사회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다. 진행절차(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1) 참가자별 발언시간 : 분(1회기준)

(2) 참가자별 발언횟수 : 회

(3) 대담·토론의 진행순서(참가자의 발언순서 포함)

4. 대담·토론 참가자(후보자)명단

후 보 자			비 고
기호	소속정당명	성 명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덧붙임 : 1. 대담·토론 참가자의 승낙서 부.
2.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부(필요시 덧붙임).

2024년 일 일

신고인(○ ○ 단체 대표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 참가자 명단 중 “기호”란에는 정당의 기호를, “성명”란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 자를 기재합니다.

붙임 32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내)]

대담·토론회 참석승낙서

1. 주 최 단 체 명
2. 개 최 일 시
3. 대담·토론 참가자
 - 가. 참 가 자 별 : 후보자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가 개최하려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담·토론의 참가자로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4년 월 일

승낙인 후 보 자 ①

(단체) 귀중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개최일시
3. 대담·토론회 참석자
 - 가. 참석자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후보자)·(대담·토론자) ○ ○ ○ 인
 ○○당 대표자 ○ ○ ○ 직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 “대담·토론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붙임 34 [토론위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대담·토론자) 성명

위 본인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2024년 월 일

(후보자)·(대담·토론자) ○ ○ ○ (인)
○○당 대표자 ○ ○ ○ 직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35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사항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전국	
	후보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요청사항	위법정보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주소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요청내용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위반게시물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2024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인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자 ○○○) 귀중

붙임 36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사항 통보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요청일자	
요청내용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통보사유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함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사본 1부.

2024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 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 고
정강·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에 따라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2부)·(2권)·(각 2부)

2024년 월 일

제출인 [○ ○ 당 인]
 대표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배부지역”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배부가능수량”은 정강·정책홍보물의 경우 배부대상지역의 소속당원수를, 정당기관지의 경우 그 동안의 통상적인 배부수량을 기재합니다.
 3.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배부가능수량”은 “판매하려는 수량”을, “배부방법”에는 “판매하려는 장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권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4. 정강·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38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 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재외투표참관인 신고서

1. 정당의 명칭 :
2. 참관인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외거소 (전화번호)	직업	참관일자	비고

재외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과 교체”라 적습니다.
2.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40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준용]**회송참관인 신고서**

1. 정당의 명칭 :
2. 참관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참관일자	비고

회송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과 교체”라 적습니다.

정당의 위성방송 연설신고서

연설자		방송시설 구분	방송 시설명	이용일시 (부터~까지)	소요시간	비고
성명	주소(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 및 제21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당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위성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 1부

2024년 월 일

신고인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이 신고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위성방송연설의 신고시에 사용합니다.
2.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란에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4.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42 [규칙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

○○○(정당) · (후보자) 정보자료
(기호 :)

(1면) 후보자 정보
○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순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 경력을 기재합니다.
(2면)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정견·공약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주 : 1. 출력된 원고와 그 전자적 파일(PDF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면에 게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2면에 연이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 ◆ 이 자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원고에 의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순서)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 ◆ 다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자료의 1면은 해당 정당·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였고, 2면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 : 1. 정당이 정보자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원고서식 중 1면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하며, 2면은 “정당이 제출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로 작성합니다.
2. 정당·후보자별 정보자료는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라 첨부합니다.

-
- 주 : 1. 청구인란에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와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가 모두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함.
2. 수령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중앙당의 수입용 계좌를 기재함.
3. '보조금' 칸에는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청년·장애인추천보조금에서 지출한 총액을 기재함.
4. 보전청구기한 후 추가 보전청구 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추가)'라고 개서하여 활용하되, 청구 내역에 추가청구내역을 작성하고 청구금액은 기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총액을 기재함.

붙임 45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3. 조사목적 :

4. 조사방법 등

조사지역	조사일시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공표·보도 여부	기타

5. 전체 설문내용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5. “3. 조사목적”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또는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4. 조사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적습니다.
- 나.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적고,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다. “표본의 크기”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적어야 합니다.
- 라.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 전화자동응답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등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마.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결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적어야 하며, 특정 표본추출틀(DB, 패널 포함)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바. “기타”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7.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46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기관·단체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완요구 대 상 여론조사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일자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와 관련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필요 시 첨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주 : 1. 기관·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정당명)· (후보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 여론조사	공표·보도매체			
	공표·보도일자			
	공표·보도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당 인]
 [대표자 ○ ○ ○ 인]
 [후보자 ○ ○ ○ 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주 : 1.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3. '공표·보도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48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정당명	선거명·선거구명	
	신청주체	<input type="checkbox"/> 정당	<input type="checkbox"/> 후보자
	대표자성명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피신청인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성명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이의신청 대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불공정이유			
요구사항			
<p>「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이의신청인</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div style="margin-bottom: 5px;">정 당 명</div> <div style="margin-bottom: 5px;">대 표 자 ○ ○ ○ 인</div> <div style="margin-bottom: 5px;">후보자 ○ ○ ○ 인</div> <div style="margin-bottom: 5px;">(입후보예정자)</div> </div> </div>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선거보도(사진, 동영상 포함) 전문			수수료 없음

주 : 1. '요구사항' 란에는 신청인의 요구사항(행정조치 또는 정정보도요구 등)을 기재합니다.

2.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등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49 [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청구인	정당명	선거명·선거구명	
	신청주체	<input type="checkbox"/> 정당 <input type="checkbox"/> 후보자	
	대표자성명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피신청인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성명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반론보도 청구대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반론보도 청구사유	<p>「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론보도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청구인</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div style="margin-bottom: 5px;">정 당 명</div> <div style="margin-bottom: 5px;">대 표 자 ○ ○ ○ 인</div> <div style="margin-bottom: 5px;">후 보 자 ○ ○ ○ 인</div> <div style="margin-bottom: 5px;">(입후보예정자)</div> </div> </div>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1. 선거보도(사진, 동영상 포함) 전문 2. 인터넷언론사에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서 3. 당사자간 협의 경위와 불성립한 사유 4. 반론보도문			수수료 없음

주 : '반론보도 청구사유' 등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가. 주 체 : 누구든지(제한없음)

나. 객 체

1) 대상자 : 후보자

※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2) 내 용 :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인 경우

다. 방 법

1) 제출서식 : 공표한 사람·단체 및 이의사실 등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

2) 제 출 처 : 중앙위원회(사이버조사과)에 서면 제출

라. 처리절차

1) 사실확인 : 후보자,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2) 공 고 : 중앙위원회가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조사·조치)

※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3) 통 지 : 이의제기자, 공표한 사람(단체) 등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15조, 제19조]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시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동의받아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업체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법 제20조)

-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정보주체가 수집출처 요구 시 필수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법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함
(5만명 이상 정보주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법 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예 : 해당 선거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라.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 거부나 정보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법 제29조)

-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법 제30조)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법 제3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함.

※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표자,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함.

- ❖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관한 신고는 118 / 선거법 위반 신고는 1390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참고

6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1. 고용·산재보험 관련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상담전화 ☎1588-0075)

2. 고용·산재보험 관계법

-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3.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p>▶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p> <p>◎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 등에 두는 선거사무관계자는 선임기간(24. 3. 28.~4. 9.)이 14일 이내에 종료되므로, 2024. 4. 8.(월)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p> <p>◎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고용)신고서」 제출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함께 제출 권장</p> <p>◎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 제출</p> <p>◎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p>	
보험료 부담	<p>○ 고용보험료율: 20.5/1,000</p> <p>- 실업급여 보험료율: 18/1,000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p> <p>-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2.5*/1,000 (사업주 전액 부담)</p>	<p>○ 산재보험료율: 9.26/1,000 (사업주 전액 부담)</p> <p>- 사업종류 보험료율: 8/1,000</p> <p>-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0.6/1,000</p> <p>- 임금채권부담비율: 0.6/1,000</p> <p>- 석면적용요율*: 0.06/1,000</p>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규모별 보험료를 상이 2.5~8.5/1000, 근로자 150명 미만은 2.5/1000 적용 ※ 사업종류는 '정치단체'로 구분	*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해당 ※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 종류 예시에 따라 사업종류 '각급사무소'의 예시로, 가입시점 및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이 상이할 수 있음
납부 방법	월납 ※ 매월 15일까지 처리된 신고내용으로 월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2일경 고지서 발송(납부기한은 매 익월 10일)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 등에 두는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일이 2024. 3. 28. 이므로 3월 보험료로 산정되지 못하며, 4. 15.까지 관련 신고가 처리될 경우 4월 보험료로 산정·부과(납부기한 2024. 5. 10.)	
납부 의무자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액이 징수(단,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최대 5배) 될 수 있습니다.
- 사무대행기관 이용 안내
 - 서 면 :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보험사무 위탁계약 체결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하여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보험사무대행기관 검색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7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관련 점자출판시설 현황

순번	도서관명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1	강서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06 나인스퀘어 8층 801~3호 (07806)	02-2661-2280
2	강원점자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도사회복지회관 1층 102호 강원점자도서관 (24209)	033-262-1920
3	경기도 시각장애인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27-4 (16321)	031-213-7722
4	경기북부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2층·4층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1485)	031-871-0445
5	경남점자정보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서7길 59 (51759)	055-241-0023
6	경북점자도서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05(37581)	054-277-2999
7	광주시립점자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70번길 3 (61639)	062-672-9534
8	달구벌점자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 (42635)	053-526-9078
9	대구대학교점자도서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점자도서관 (38453)	053-850-5484
10	대구점자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414, 3층 대구점자도서관 (42818)	053-256-8877
11	대전점자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10 한밭도서관 별관1층(35020)	042-252-0055
12	마포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장애인복지회관 2층 (03953)	02-338-0180
13	무지개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05호 (28583)	043-237-5544
14	부산점자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72번길 9, 1층 부산점자도서관 (46938)	051-302-9010
15	성북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5가길 20 (02829)	02-923-4555 (내선:222~224)
16	세종점자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10~117호 (30150)	044-862-0033
17	송암점자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22206)	032-876-3504
18	실로암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실로암점자도서관 (08757)	02-880-0670

순번	도서관명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19	전라북도점자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학산길 26-3 (54881)	063-288-0046
20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2층 (03618)	02-393-4568
21	울산광역시 점자도서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성수빌딩 2층) (44676)	052-256-3308
22	전남점자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48, 4층 (58707)	061-284-6333
23	전라남도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19, 3층 (58749)	061-283-6969
24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6, 2층 (63213)	064-723-7777
25	제주점자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63311)	064-727-5545
26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02 2층 (31139)	041-578-4051
27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3 (06335)	02-451-6000
28	한국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 (05242)	02-3426-7411
29	한국학생점자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31-1 (03031)	02-880-0610
30	해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4 (14575)	032-650-4600
31	IT로 열린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6 이삭빌딩 301호(06705)	02-3471-3434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제공

8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6 규§136의4, 5
'23. 12. 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3. 12. 12.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4. 1. 11.까지	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지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법§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6 규§136의4, 5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 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8, 규§11 법§65⑤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9.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9.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장 법 제11장
4. 22.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9.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표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병령”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 각각 약기함.

• 재외선거 :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시	법§112 ~ §117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법§108③
'23. 8. 14.(월)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공관	재외위원회 설치 개시일전 60일까지	법§218② 규§136의2①②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정당, 공관		
'23. 10. 13.(금)부터 '24. 5. 10.(금)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23. 10. 13.(금)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180일까지	법§218② 규§136의2③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법§218⑧ 규§136의2⑤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법§218의4④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재외위원회	위촉한 때 지체없이	법§218⑥ 규§136의2⑦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금)부터 '24. 4. 10.(수)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9②
'23. 10. 30.(월)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23. 11. 11.(토)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218의34①, §39② 규§12①
'24. 2. 10.(토)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등록 신청대상자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3. 11. 12.(일)부터 '24. 2. 10.(토)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	중앙위원회		법§218의8② 규§136의8②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신고·신청기간 만료일 후 즉시	법§218의6 규§136의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① 규§136의6①~③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접수 후	법§218의7② 규§136의6④
'23. 11. 15.(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조의2① 규§2①②
'23. 12. 2.(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51①②
'23. 12. 10.(일)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상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현황 기준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규§10의3②
'23. 12. 11.(월)부터 '24. 5. 10.(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23. 12. 12.(화)까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3. 12. 12.(화)부터 '24. 4. 10.(수)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① 법§93①
'23. 12. 12.(화)부터 '24. 5. 10.(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정금법§34①④ 정금규§32②, §34①
'23. 12. 12.(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12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3. 12. 29.(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24. 1. 28.(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법§60의2②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법§61①,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2③④, §63① 규§28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①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규§21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 개설신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에 걸쳐 발송 하려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에〉		매월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 기준	법§60의2⑨ 규§26⑤
	예비후보자 당직조회(시·도위원회 일괄조회 가능) 〈정당에〉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23. 12. 12.(화)부터 '24. 4. 10.(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4①
'23. 12. 19.(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3①
'24. 1. 1(월)부터 3. 27.(수)까지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60의2
'24. 1. 10.(수)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 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개월까지	규§10의3③
1. 11.(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전30일)까지	법§53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60②
1. 11.(목)부터 3. 20.(수)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 11.(목)부터 4. 10.(수)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1. 11.(목)부터 3. 10.(일)까지	당원집회 개최 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 개최일전일까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1. 11.(목)부터 3. 27.(수)까지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광고개제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①③
1. 11.(목)까지	재외국민수 현황 통보 <재외위원회에>	공관의 장	선거일전 90일까지	규§136의16①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국방부장관		규§136의16②
1. 31.(수)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2이상 공관을 둔 국가는 대사관)	매년 1월 31일까지	법§218의5④
2. 10.(토)까지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추가 재외투표소(병영내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	재외위원회		법§218의17② 규§136의16③
2. 10.(토)부터 3. 27.(수)까지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2. 10.(토)부터 4. 10.(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10.(토)부터 4. 20.(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3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규§2의4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2. 11.(일)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지방선거에 한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법§16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 11.(일)부터 4. 1.(월)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법§218의22③
2. 21.(수)부터 3. 1.(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규§136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218의9 규§136의9
2. 28.(수)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8④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136의8③
	재외선거인명부 등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규§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2.)전 3일까지	법§218의34①, §40③	
3. 2.(토)부터 3. 6.(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명부작성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규§136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열람기간중	법§218의11①
3. 7.(목)부터 3. 10.(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2②
3. 7.(목)부터 3. 1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3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 27.(화)부터 3. 27.(수)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기간	언론기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2④ 토론규§22
3. 8.(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법§65⑦
3. 9.(토)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0일까지	규§11⑥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법§38③
3. 11.(월)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해당 기관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②④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 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규§10의3③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장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규§10의3④
3. 11.(월)까지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 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 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규§27②
3. 11.(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218의14①, §71⑤ 규§36①
3. 11.(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자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전자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11②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인명부 등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36의33①
3. 16.(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60의3④
3. 16.(토)부터 3. 22.(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법§48②④
3. 18.(월)까지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⑫, §66⑹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정당·후보자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통지는 후보자등록 시에)	법§71⑥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71⑥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65⑤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3. 19.(화)부터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7 규§10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 등재여부 확인			법§37③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8① 규§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⑤⑥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거소·선상 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3. 21.(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열람 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규§13③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방법 등 공고			법§44②③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3. 21.(목)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선거일전 20일까지	토론규§27③
3. 21.(목)부터 3. 22.(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서	법§49④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 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감선거]			
	비당원확인서 제출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관리규칙§2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56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시	법§71⑥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법§61①, §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없이	법§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신고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9⑧ 규§20③
	전과기록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법§49⑩ 규§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후	법§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규§71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②③⑤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사유발생시	규§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23의2① 규§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법§52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정당 (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조의2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발행 즉시	법§139③
	신문광고계재 인증서 교부신청(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광고전까지	법§69⑤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비용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35①
	선거공약서 배부 신고<선거구위원회에>, 제출<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	신고 : 배부일 전일까지 제출 : 배부 전까지	법§66⑥
	현수막 표시 교부신청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때	법§67① 규§32②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중앙당, 후보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규§36⑦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 시간 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려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 장치, 녹음기·녹화기의 표시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려는 때	법§79⑥⑩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려는 때	법§91④ 규§48②
	불법시설물 표시문 첨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법선전물 우송증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우체국장	우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시	법§218의14①, §71⑥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정당		법§218의14④ 규§136의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⑤ 규§136의28①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3. 22.(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까지	법§73⑤ 규§38②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 까지	법§46⑤ 규§18④
3. 24.(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3. 24.(일)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법§218의20④
3. 24.(일)부터 3. 26.(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3. 25.(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재외투표용지 모형 안내 (재외투표관리관에)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규§136의17
3. 26.(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후 3일까지	법§149①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추가 투표소는 운영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규§136의15⑤
3. 27.(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정당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없이	규§70③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법§149⑤ 규§70④
3. 27.(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선정·신고 (중앙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선거일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7.(수)부터 4. 1.(월)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보조급배분 대상정당		법§218의20③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22 규§136의20⑥, §136의21③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우,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218의22④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공관개표 실시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 후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공관개표 실시 결정(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개표소 실시 결정 통지 등(사유발생시)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공관개표 실시 결정 후 지체없이	법§218의24⑥ 규§136의25②
3. 27.(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7.(수)부터 3. 28.(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3. 28.(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자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군의 정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법§46②③⑤ 규§18③
3. 28.(목)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법§33③
3. 28.(목)부터 4. 9.(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법§59
3. 28.(목)까지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23①
3. 28.(목)부터 4. 9.(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 개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정당	방송일 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71⑩, 규§36⑦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218의14① §70③ 규§35①
3. 28.(목)부터 4. 10.(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⑪ 규§20⑤
3. 29.(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 (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 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외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⑫ 규§29⑦, §30⑫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 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서본 투표구와 (사전)투표소 입구에 첨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⑥⑦⑪, §65⑫ 규§29⑧, §30⑫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통지를 받은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23②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 (정당·후보자, 선관위에)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규§28
3. 29.(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3. 30.(토)부터 4. 10.(수)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16의2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3. 3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무투표 통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88②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법§65⑥, §154①⑤ 규§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법§65⑥
	투표안내문 (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일)부터 4. 10.(수)까지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사전)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78②
3. 31.(일)부터 4. 10.(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4. 1.(월)까지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54의2①
4. 1.(월)까지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규§86의2⑤
	귀국투표 신고(선상투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선상투표신고인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58의3③
4. 1.(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 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4. 2.(화)부터 4. 5.(금)까지	선상투표 및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전송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선상투표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법§158의3⑩ 규§86의3③
4. 2.(화)부터 4. 10.(수)까지	귀국투표 신고(재외선거)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218의16③ 규§136의14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3.(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88①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4. 4.(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 규§3③, §88①
4. 5.(금)부터 4. 6.(토)까지	사전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2② 규§88①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2②,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및 관내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4. 5.(금)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 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4. 7.(일)까지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4. 8.(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법§181② 규§102①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	법§44의2④
4. 9.(화)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시·도위원회에>	선장	선거일전일까지	법§158의3⑥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3⑥
4. 9.(화)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51① 규§16의2③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 규§67의2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만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③ 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법§181③ 규§102
공개개표소 설비(사유발생시)	재외투표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규§136의25④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④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인계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인계 시	법§151⑤
선거일 4. 10.(수)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 제10장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218의23② 규§136의24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176③
	투표함 등 송부 <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 제11장 법§218의24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시·도위원회에>		개표록 작성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 개표 및 선거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8,§189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218의24③~⑥ 규§136의25
4. 10.(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중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일까지	법§60②
4. 20.(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4. 22.(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4. 24.(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후보자추천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③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4. 25.(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규§25④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④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요청이 있는 경우)	법§49⑨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30.(화)까지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5. 10.(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지방자치단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 [지방선거]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당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령§16
5. 17.(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 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인터넷 (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해당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 사본교부신청서 수입인 지 첨부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할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관할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5. 20.(월)까지	선상투표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 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박회사	선거일후 40일까지	규§86의4①
6. 9.(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위원회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후보자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정금법§58①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관할 선거위원회에>	해당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해당 중앙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0. 10.(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후 6월 이내	법§60②